

## 1 사업계획

### 1. 사업개요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설정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친환경 계획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착

### 2. 사업대상

- 새로이 설치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계획하며, 기 결정된 시설이나 지구외 시설은 사업비에서 제외
- 시설 공사비는 「201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94호, 2012.06.08」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임
- 사업비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만 산정함

### 3. 소요사업비

구 분	사 설 규 모		단가 (천원/㎡)	사업비 (천원)
	개소	규모		
계	340	A=380,075㎡	-	52,177,992
도 로	소로1류	L=1,486m A=16,064㎡	149	2,393,536
	소로2류	L=10,630m A=84,690㎡	149	12,618,810
	소로3류	L=34,611m A=214,075㎡	149	31,897,175
공 원	37	A=38,032㎡	87	3,308,784
녹 지	6	A=10,040㎡	74	742,960
광 장	1	A=6,741㎡	71	478,611
주차장	17	A=10,396㎡	71	738,116

## 2 집행계획

### 1. 단계별 투자계획

- 투자계획은 2012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기반시설을 토대로 공사비 산출
- 사업집행시기는 2013년 ~ 2022년(10년) 사업집행을 전제로 투자계획 산출

### 2. 재원조달계획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도로, 공원, 주차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 또는 국고지원 등을 고려하여 집행 유도

[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

구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천시	계	52,177,992	9,017,598	9,728,280	7,851,480	4,748,473	5,124,732	5,183,449	2,723,822	2,675,964	2,402,880	2,721,314
	도로	46,909,521	8,492,553	7,879,716	7,461,026	4,479,983	4,952,015	4,489,221	2,503,349	2,315,758	2,122,058	2,213,842
	공원녹지광장	4,530,355	525,045	1,693,287	390,454	148,074	70,122	694,228	180,003	284,094	77,691	467,357
	주차장	738,116	-	155,277	-	120,416	102,595	-	40,470	76,112	203,131	40,115
연수구	소계	2,974,170	900,659	583,958	101,022	679,440	56,322	74,202	139,613	123,819	181,780	133,355
	도로	2,784,363	780,164	514,646	101,022	679,440	56,322	74,202	139,613	123,819	181,780	133,355
	공원녹지광장	151,467	120,495	30,972	-	-	-	-	-	-	-	-
	주차장	38,340	-	38,340	-	-	-	-	-	-	-	-
남동구	소계	15,453,501	2,320,353	1,572,851	1,647,317	821,606	2,561,374	2,731,621	1,174,990	966,575	670,090	986,724
	도로	13,682,223	2,189,853	1,494,023	1,517,863	713,859	2,451,050	2,208,031	1,044,490	774,353	596,596	692,105
	공원녹지광장	1,584,548	130,500	78,828	129,454	15,660	39,324	523,590	130,500	192,222	49,851	294,619
	주차장	186,730	-	-	-	92,087	71,000	-	-	-	23,643	-
부평구	소계	5,334,004	474,950	2,453,896	383,079	732,335	357,749	175,969	155,854	147,659	191,763	260,750
	도로	3,849,862	461,900	982,804	383,079	732,335	357,749	175,969	155,854	147,659	191,763	260,750
	공원녹지광장	1,367,205	13,050	1,354,155	-	-	-	-	-	-	-	-
	주차장	116,937	-	116,937	-	-	-	-	-	-	-	-
계양구	소계	26,274,996	4,990,111	4,716,563	5,211,972	2,335,696	2,076,575	2,085,586	1,170,521	1,302,470	1,252,712	1,132,790
	도로	24,625,230	4,729,111	4,542,563	4,950,972	2,174,953	2,014,182	1,914,948	1,080,548	1,134,486	1,045,384	1,038,083
	공원녹지광장	1,253,657	261,000	174,000	261,000	132,414	30,798	170,638	49,503	91,872	27,840	54,592
	주차장	396,109	-	-	-	28,329	31,595	-	40,470	76,112	179,488	40,115
서구	소계	2,141,321	331,525	401,012	508,090	179,396	72,712	116,071	82,844	135,441	106,535	207,695
	도로	1,967,843	331,525	345,680	508,090	179,396	72,712	116,071	82,844	135,441	106,535	89,549
	공원녹지광장	173,478	-	55,332	-	-	-	-	-	-	-	118,146
	주차장	-	-	-	-	-	-	-	-	-	-	-

##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66,846	증)1,375,083	2,041,929	
신설	큰도장	연수구 선학동 100-2 일원	-	증) 60,631	60,631	
신설	간도장	연수구 선학동 88-4 일원	-	증) 35,977	35,977	
신설	경신	남동구 수산동 45-8 일원	-	증) 74,222	74,222	
신설	냉정	남동구 수산동 140-4 일원	-	증) 86,106	86,106	
신설	남발촌	남동구 수산동 366 일원	-	증) 33,313	33,313	
신설	능골	남동구 수산동 586-2 일원	-	증) 62,628	62,628	
신설	도림1	남동구 도림동 222 일원	-	증) 90,357	90,357	
신설	주적	남동구 도림동 347-9 일원	-	증) 34,328	34,328	
신설	동덕	남동구 논현동 49 일원	-	증) 27,903	27,903	
신설	수현	남동구 장수동 381-2 일원	-	증) 44,465	44,465	
신설	만의골	남동구 장수동 115 일원	-	증) 62,094	62,094	
신설	연락골	남동구 운연동 10-1 일원	-	증) 71,156	71,156	
신설	산저	남동구 만수동 696-4 일원	-	증) 35,419	35,419	
신설	결재	남동구 서창동 51-2 일원	-	증) 23,522	23,522	
신설	제척	남동구 운연동 343-6 일원	-	증) 20,724	20,724	
신설	화랑	부평구 산곡동 370-336 일원	-	증) 6,889	6,889	
기정	열우물	부평구 십정동 30-3 일원	167,946	-	167,946	인천시고시 제2006-116호 (2006.07.1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독실	계양구 독실동 157-1 일원	-	증) 26,103	26,103	
기정	이화	계양구 이화동 250 일원	96,289	-	96,289	인천시고시 제2006-116호 (2006.07.18)
신설	오류	계양구 오류동 120-6 일원		증) 55,840	55,840	
신설	갈현2	계양구 갈현동 48-3 일원	-	증) 23,709	23,709	
신설	갈현	계양구 갈현동 101-2 일원	-	증) 21,401	21,401	
신설	선주지2	계양구 이화동 122-35 일원	-	증) 19,686	19,686	
신설	선주지	계양구 선주지동 113-1 일원	-	증) 117,747	117,747	
신설	목상	계양구 목상동 97-2 일원	-	증) 21,768	21,768	
신설	다남6	계양구 다남동 72-2 일원	-	증) 30,942	30,942	
신설	다남123	계양구 다남동 78-2 일원	-	증) 51,174	51,174	
신설	다남5	계양구 다남동 102-1 일원	-	증) 41,945	41,945	
기정	상야	계양구 상야동 141-4 일원	402,611	-	402,611	인천시고시 제2006-116호 (2006.07.18)
신설	방축	계양구 방축동 17-1 일원	-	증) 17,033	17,033	
신설	송현	계양구 박촌동 214-1 일원	-	증) 24,419	24,419	
신설	마가묘	계양구 박촌동 287-13 일원	-	증) 9,161	9,161	
신설	이화2	계양구 이화동 23-47 일원	-	증) 39,752	39,752	
신설	하동	서구 검암동 454-6 일원	-	증) 48,715	48,715	
신설	시천1	서구 시천동 111-1 일원	-	증) 23,673	23,673	
신설	다락방	서구 석남동 322-32 일원	-	증) 32,281	32,28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변 경 사 유
신 설	큰도장	연수구 선학동 100-2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간도장	연수구 선학동 88-4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경신	남동구 수산동 45-8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냉정	남동구 수산동 140-4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남발촌	남동구 수산동 366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능골	남동구 수산동 586-2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도림1	남동구 도림동 222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주적	남동구 도림동 347-9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동녘	남동구 논현동 49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수현	남동구 장수동 381-2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만의골	남동구 장수동 115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연락골	남동구 운연동 10-1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산저	남동구 만수동 696-4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결재	남동구 서창동 51-2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제척	남동구 운연동 343-6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화랑	부평구 산곡동 370-336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계속)

구 분	구역명	위 치	변 경 사 유
신 설	독실	계양구 독실동 157-1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오류	계양구 오류동 120-6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갈현2	계양구 갈현동 48-3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갈현	계양구 갈현동 101-2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선주지2	계양구 이화동 122-35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선주지	계양구 선주지동 113-1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목상	계양구 목상동 97-2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다남6	계양구 다남동 72-2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다남123	계양구 다남동 78-2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다남5	계양구 다남동 102-1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방축	계양구 방축동 17-1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송현	계양구 박촌동 214-1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마가묘	계양구 박촌동 287-13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이화2	계양구 이화동 23-47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하동	서구 검암동 454-6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시천1	서구 시천동 111-1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 설	다락방	서구 석남동 322-32 일원	• 「개발제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2.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041,929	-	2,041,929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024,896	-	2,024,896	99.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7,033	-	17,033	0.8	방축

## 3.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고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이화, 오류, 갈현2, 갈현, 선주지2, 선주지, 다남6, 다남123, 다남5, 상야, 방축, 송현, 마가묘, 이화2	최고 고도 지구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외 9개동 일원	수평표면:해발 57.86m 이하 진입표면:해발 10.5~57.86m 이하 전이표면:해발 10.5~57.86m 이하 원추표면 : 57.86~112.86m 이하	29,268,000 (951,709)	인고 제151호 (1994.9.10)	

주) ( )는 구역 내 고도지구 포함된 면적중 취락지구 면적임

○ 시설보호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이화, 오류, 갈현2, 갈현, 선주지2, 선주지, 다남6, 다남123, 다남5, 상야, 방축, 송현, 마가묘, 이화2	공항시설 보호지구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외 9개동 일원	29,268,000 (951,709)	인고 제151호 (1994.9.10)	

주) ( )는 구역 내 고도지구 포함된 면적중 취락지구 면적임

## 4.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1) 교통시설

#####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기 정	합계	313	54,994	447,802	15	3,337	62,139	35	11,645	99,535	263	40,012	286,128
	광로	3	526	18,594	-	-	-	1	52	2,672	2	474	15,922
	대로	9	2,491	70,299	2	783	27,405	1	55	1,625	6	1,653	41,269
	중로	10	2,031	33,271	6	1,012	19,314	2	598	8,905	2	421	5,052
	소로	291	49,946	325,638	7	1,542	15,420	31	10,940	86,333	253	37,464	223,885
변 경	합계	316	54,801	468,300	17	3,685	75,365	37	11,412	99,717	262	39,704	293,218
	광로	3	526	18,408	-	-	-	1	52	2,434	2	474	15,974
	대로	9	2,491	79,423	2	783	34,355	1	55	2,914	6	1,653	42,154
	중로	14	2,469	38,654	7	1,175	22,500	3	607	9,062	4	687	7,092
	소로	290	49,315	331,815	8	1,727	18,510	32	10,698	85,307	250	36,890	227,998

주) 연장 및 면적은 구역내 도로의 연장 및 면적임

○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66	20	보조 간선	466 (8)	광2-8 선학동	대2-7 관교동	일반 도로	97.6.10 (인고25)	큰도장
기정	중로	1	167	20	보조 간선	510 (8)	광2-8 선학동	대2-7 관교동	일반 도로	97.6.10 (인고25)	큰도장
기정	소로	2	1	8	국지	135	광2-8 선학동 28-11	중1-166 선학동 30-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큰도장
기정	소로	2	2	8	국지	517	중1-167 선학동 101-2	- 선학동 69-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큰도장
기정	소로	3	1	6	국지	576	중1-167 선학동 38-1	소2-2 선학동 69-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큰도장
기정	소로	3	2	6	국지	58	소2-2 선학동 99-11	소3-1 선학동 99-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큰도장
기정	소로	3	3	6	국지	80	소2-2 선학동96-5	소3-1 선학동 96-1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큰도장
기정	소로	3	4	6	국지	145	소2-2 선학동96-21	- 선학동 126-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큰도장
기정	소로	3	5	6	국지	91	소2-2 선학동 96-26	소3-1 선학동 98-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큰도장
기정	소로	3	6	6	국지	174	소3-5 선학동 98-6	소3-1 선학동 59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큰도장
기정	소로	3	7	6	국지	39	소2-2 선학동 96-7	소3-6 선학동 97-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큰도장
기정	광로	2	8	50-70	집산	(52)	광2-1	대2-56 항동	일반 도로	95.2.7 (인고95-20)	간도장
기정	소로	3	1	6	국지	575	광2-8 선학동 136-1	- 선학동 91-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간도장
변경	소로	3	1	6	국지	575	광2-8 선학동 136-2	- 선학동 91-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2	6	국지	177	광2-8 선학동131-4	소3-1 선학동 13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간도장
기정	소로	3	3	6	국지	152	소3-1 선학동 139-8	소3-1 선학동 137-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간도장
변경	소로	3	3	6	국지	152	소3-1 선학동 139-8	소3-1 선학동 137-1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중점 정정
기정	소로	3	4	6	국지	21	소3-2 선학동 137-4	소3-3 선학동 137-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간도장
기정	소로	3	5	6	국지	113	광 2-8 선학동 134-2	- 선학동 150-8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간도장
변경	소로	3	5	6	국지	113	광 2-8 선학동 134-19	- 선학동 150-8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1	6	국지	474	- 수산동 28-17	소3-2 수산동 72-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경신
기정	소로	3	2	6	국지	495	- 구월동 653-2	소3-1 수산동 50-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경신
변경	소로	3	2	6	국지	495	- 구월동 653-16	소3-1 수산동 50-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3	6	국지	263	소3-2 구월동 635-4	- 구월동 644-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경신

주) ( )는 구역 내 도로에 관한 사항임

○ 도로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4	6	국지	42	소3-3 구월동 638	- 구월동 63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경신
변경	소로	3	4	6	국지	42	소3-3 구월동 638-1	- 구월동 63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5	6	국지	98	소3-1 수산동 73	- 수산동 75-8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경신
변경	소로	3	5	6	국지	108	소3-1 수산동 73	- 수산동 81-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중점 정정, 도로 확장
기정	소로	3	6	6	국지	102	소3-1 수산동 49-3	소3-6 수산동 45-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경신
변경	소로	3	6	6	국지	102	소3-1 수산동 49-3	소3-2 수산동 45-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중점 정정
기정	소로	3	7	6	국지	120	소3-1 수산동 67-19	소3-9 수산동 67-1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경신
기정	소로	3	8	6	국지	212	소3-1 수산동 55-3	- 수산동 64-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경신
변경	소로	3	8	6	국지	212	소3-1 수산동 55-3	- 수산동 64-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중점 정정
기정	소로	3	9	6	국지	115	소3-1 수산동 51-3	소3-2 수산동 45-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경신
기정	소로	3	10	6	국지	60	소3-1 수산동 38	- 수산동 30-48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경신
기정	대로	2	7	30 ~ 35	보조 간선	9,727 (55)	광2-1 용현동	대1-20 수산동	일반 도로	86.9.27 (건고427)	냉정
기정	소로	2	1	8	국지	912	대1-13 수산동 177-1	- 수산동 277-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냉정
기정	소로	3	1	6	국지	148	소2-1 수산동 201-1	소2-1 수산동 200-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냉정
기정	소로	3	2	6	국지	78	대2-7 수산동 181	소2-1 수산동 180-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냉정
기정	소로	3	3	6	국지	128	소2-1 수산동 155	소3-4 수산동 150-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냉정
기정	소로	3	4	6	국지	148	소2-1 수산동 150-4	소3-6 수산동 140-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냉정
기정	소로	3	5	6	국지	66	소2-1 수산동 142-4	소3-4 수산동 150-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냉정
기정	소로	3	6	6	국지	158	소2-1 수산동 140-7	- 수산동 121-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냉정
기정	소로	3	7	6	국지	635 (515)	소2-1 수산동 135-6	- 수산동 310-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냉정
기정	소로	3	8	6	국지	65	소2-1 수산동 276-3	- 수산동 271-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냉정
변경	소로	3	8	6	국지	65	소2-1 수산동 276-3	- 수산동 262-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중점 정정
기정	소로	3	9	6	국지	148	소2-1 수산동 277-1	소3-7 수산동 310-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냉정
기정	소로	3	10	6	국지	86	소3-7 수산동 302-2	- 수산동 30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냉정
기정	소로	3	11	6	국지	60	소3-7 수산동 297	- 수산동 294-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냉정
변경	소로	3	11	6	국지	60	소3-7 수산동 294-1	- 수산동 294-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주) ( )는 구역 내 도로에 관한 사항임

○ 도로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	8	국지	502	대1-20 수산동 375-21	- 수산동 345-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남발촌
기정	소로	2	2	8	국지	55	소2-1 수산동 357	소3-1 수산동 354-9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남발촌
기정	소로	3	1	6	국지	295	소2-2 수산동 598	소2-2 수산동 354-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남발촌
기정	소로	3	2	6	국지	62	소2-1 수산동 359	- 수산동 36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남발촌
변경	소로	3	2	6	국지	61	소2-1 수산동 359-1	- 수산동 36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3	6	국지	19	소2-1 수산동 358	- 수산동 36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남발촌
변경	소로	3	3	6	국지	19	소2-1 수산동 358	- 수산동 365-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중점 정정
기정	소로	3	4	6	국지	22	소3-1 수산동 490	- 수산동 48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남발촌
기정	소로	2	1	8	국지	435	- 수산동 322	- 수산동 549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능골
변경	소로	2	1	8	국지	435	- 수산동 322	- 수산동 549-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중점 정정
기정	소로	3	1	6	국지	167	소2-1 수산동 338-4	소2-1 수산동 338-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능골
변경	소로	3	1	6	국지	167	소2-1 수산동 338-9	소2-1 수산동 338-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중점 정정
기정	소로	3	2	6	국지	114	소2-1 수산동 514-2	소3-1 수산동 52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능골
변경	소로	3	2	6	국지	114	소2-1 수산동 514-1	소3-1 수산동 52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3	6	국지	128	소2-1 수산동 512-1	- 수산동 51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능골
기정	소로	3	4	6	국지	348	소3-5 수산동 529-2	- 수산동 56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능골
기정	소로	3	5	6	국지	511	- 수산동 529-1	- 수산동 57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능골
기정	소로	3	6	6	국지	162	소3-4 수산동 540-3	소3-5 수산동 58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능골
기정	소로	3	7	6	국지	9	소3-1 수산동 540-3	- 수산동 53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능골
변경	소로	3	7	6	국지	9	소3-4 수산동 538-12	- 수산동 53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주) ( )는 구역 내 도로에 관한 사항임

○ 도로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21	25	부조 간선	5,490 (423)	광3-5 고잔동	대1-20 도림동	일반 도로	75.5.16 (건고 54)	도림
기정	소로	2	1	8	국지	(82)	대3-21	-	일반 도로	-	도림
변경	소로	2	1	8~10	국지	508 (82)	대3-21	중3-182	일반 도로	인고113호 2000.6.27	폭원, 중점 정정
기정	소로	2	2	8	국지	200	대3-21 도림동 111-2	소3-1 도림동 산1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
기정	소로	3	1	6	국지	555	대3-21 도림동 30-6	소3-8 도림동 110-1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
변경	소로	3	1	6	국지	555	대3-21 도림동 30-6	소3-8 도림동 110-2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중점 정정
기정	소로	3	2	6	국지	37	소3-1 도림동 21-5	- 도림동 2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
기정	소로	3	3	6	국지	62	소3-1 도림동 31-2	소3-5 도림동 31-1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
기정	소로	3	4	6	국지	114	소2-2 도림동 105-1	소3-3 도림동 99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
기정	소로	3	5	6	국지	192	소3-7 도림동 96-7	소3-7 도림동 96-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
기정	소로	3	6	6	국지	51	소2-2 도림동 106-2	소3-5 도림동 107-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
기정	소로	3	7	6	국지	293	소2-2 도림동 111-6	소3-1 도림동 31-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
변경	소로	3	7	6	국지	293	소2-2 도림동 111-6	소3-1 도림동 31-1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중점 정정
기정	소로	3	8	6	국지	88	소2-2 도림동 110-11	소2-1 도림동 203-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
기정	소로	3	9	6	국지	45	소2-2 도림동 109	소3-1 도림동 110-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
기정	소로	3	10	6	국지	56	소3-12 도림동 220-2	소3-1 도림동 20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
변경	소로	3	10	6	국지	56	소3-12 도림동 220-5	소3-1 도림동 20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11	6	국지	70	소3-12 도림동 209-1	소3-1 도림동 205-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
기정	소로	3	12	6	국지	215	소2-1 도림동 204-2	소3-1 도림동 산16-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
변경	소로	3	12	6	국지	215	소2-1 도림동 204-2	소3-1 도림동 산16-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13	6	국지	47	소2-1 도림동 202-19	- 도림동 201-9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
변경	소로	3	13	6	국지	47	소2-1 도림동 202-19	- 도림동 202-1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중점 정정
기정	소로	3	14	6	국지	204	소3-12 도림동 220-3	- 도림동 22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
기정	소로	3	15	6	국지	99	소3-14 도림동 219-2	- 도림동 228-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

주) ( )는 구역 내 도로에 관한 사항임

○ 도로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6	6	국지	139	대3-21 도림동 95-10	- 도림동 4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림
기정	소로	3	17	4	특수	10	대3-21 도림동 95-10	소3-7 도림 96-7	보행자 전용	인고98호 2006.6.5	도림
변경	소로	3	17	4	특수	10	대3-21 도림동 96-15	소3-7 도림 96-7	보행자 전용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18	4	특수	10	대3-21 도림동 96-3	소3-7 도림 96-4	보행자 전용	인고98호 2006.6.5	도림
변경	소로	3	18	4	특수	10	대3-21 도림동 96-3	소3-7 도림 96-10	보행자 전용	인고98호 2006.6.5	중점 정정
기정	대로	3	21	25	보조 간선	5,490 (389)	광3-5 고잔동	대1-20 도림동	일반 도로	75.5.16 (건고54)	주적
기정	중로	3	307	12	국지	1,220 (225)	광3-6	대3-21	일반 도로	1987.9.14	주적
기정	소로	3	1	6	국지	98	소2-1 도림동 346-1	- 도림동 356-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주적
변경	소로	3	1	6	국지	98	중3-307 도림동 346-1	- 도림동 356-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2	6	국지	49	대3-21 도림동 350-4	소3-1 도림동 356-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주적
변경	소로	3	2	6	국지	49	대3-21 도림동 310-6	소3-1 도림동 356-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3	6	국지	41	대3-21 도림동 342-2	소2-1 도림동 346-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주적
변경	소로	3	3	6	국지	41	대3-21 도림동 310-6	중3-307 도림동 346-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중점 정정
기정	소로	3	4	6	국지	139	대3-21 도림동 342-2	대3-21 도림동 343-9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주적
변경	소로	3	4	6	국지	139	대3-21 도림동 310-6	대3-21 도림동 310-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중점 정정
기정	소로	3	5	6	국지	24	대3-21 도림동 353-5	- 도림동 353-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주적
변경	소로	3	5	6	국지	24	대3-21 도림동 310-6	- 도림동 353-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대로	3	23	25	주간선	4,010 (11)	대3-24 논현동	중2-58 고잔동	일반 도로	86.11.24 (인고1049)	동년
기정	소로	3	1	6	국지	450	대1-20 논현동 26-6	소3-2 논현동 50-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동년
기정	소로	3	2	6	국지	82	대3-23 논현동 52-1	소3-3 논현동 산12-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동년
변경	소로	3	2	6	국지	82	대3-23 논현동 52-2	소3-3 논현동 산12-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3	6	국지	147	대3-23 논현동 56-2	- 논현동 산12-1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동년
변경	소로	3	3	6	국지	147	대3-23 논현동 56-3	- 논현동 산12-1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4	6	국지	170	소3-1 논현동 49	소3-2 논현동 산1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동년
기정	소로	3	5	6	국지	113	소3-1 논현동 44-6	- 논현동 41-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동년
기정	소로	3	6	6	국지	58	소3-1 논현동 29-11	- 논현동 529-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동년

주) ( )는 구역 내 도로에 관한 사항임

○ 도로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0	20		1,360 (354)	광3-15	소1-1 만수동	일반 도로	91.4.15 (인고91-55)	수현
변경	중로	1	10	20	보조 간선	1,360 (354)	광3-15	소1-1 만수동	일반 도로	91.4.15 (인고91-55)	도로기능 기재누락
기정	소로	2	1	8	국지	140	중1-10 장수동 398-2	소3-5 장수동 355-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수현
기정	소로	2	2	8	국지	163 (60)	중1-10	광3-1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수현
변경	소로	2	2	8	국지	163 (60)	중1-10	광3-1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1	6	국지	201	중1-10 장수동 387	소2-1 장수동 394-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수현
기정	소로	3	2	6	국지	50	중1-10 장수동 394	소3-1 장수동 39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수현
기정	소로	3	3	6	국지	232	소3-1 장수동 369-1	소2-1 장수동 355-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수현
변경	소로	3	3	6	국지	231	소3-1 장수동 369-1	소2-1 장수동 355-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4	6	국지	98	소2-1 장수동 356-3	소3-3 장수동 37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수현
기정	소로	3	5	6	국지	110	중1-10 장수동 397-4	- 장수동 400-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수현
기정	중로	1	42	20	국지	2,212 (258)	광3-7 운연동	- 장수동 30-3	일반 도로	80.10.14 (건고80-331)	만의골
기정	소로	2	1	8	국지	321	중1-42 장수동 46-4	- 장수동 60-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만의골
변경	소로	2	1	8	국지	321	중1-42 장수동 46-12	- 장수동 60-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요류정정
기정	소로	3	1	6	국지	120	중1-42 장수동 35-3	소2-1 장수동 12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만의골
기정	소로	3	2	6	국지	380	소2-1 장수동 123	- 장수동 63-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만의골
변경	소로	3	2	6	국지	375	소2-1 장수동 123-4	- 장수동 63-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도로선형 일부변경

주) ( )는 구역 내 도로에 관한 사항임

○ 도로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3	6	국지	66	소2-1 장수동 115	소3-2 장수동 122-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만의골
변경	소로	3	3	6	국지	66	소2-1 장수동 115-7	소3-2 장수동 122-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4	6	국지	109	소21 장수동 59-1	소3-2 장수동 63-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만의골
변경	소로	3	4	6	국지	110	소21 장수동 59-1	소3-2 장수동 63-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5	6	국지	55	소3-2 장수동 65	- 장수동 68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만의골
폐지	소로	3	6	4	특수	43	소2-1 장수동 60-1	- 장수동 63-6	보행자 전용	인고98호 (2006.6.5)	만의골 (도로폐지)
폐지	소로	3	7	4	특수	21	소3-2 장수동 74	- 장수동 63-2	보행자 전용	인고98호 (2006.6.5)	만의골 (도로폐지)
기정	광로	3	7	40~42	주간선	9,450 (72)	대2-14 용현동	시흥시계 운연동	일반 도로	97.2.18 (인고97-35)	연락골
기정	중로	1	42	20	국지	2,212 (322)	광3-7 운연동	- 장수동 30-3	일반 도로	80.10.14 (건고80-331)	연락골
기정	소로	3	1	6	국지	347	광3-7 운연동 39-11	중1-42 운연동 17-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연락골
변경	소로	3	1	6	국지	347	광3-7 운연동 39-11	중1-42 운연동 17-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2	6	국지	214	광3-7 운연동 산60-7	소3-1 운연동 4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연락골
기정	소로	3	3	6	국지	33	광3-7 운연동 20-20	소3-1 운연동 2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연락골
기정	소로	3	4	6	국지	141	중1-42 운연동 494	소3-5 운연동 10-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연락골
변경	소로	3	4	6	국지	146	중1-42 운연동 494	소3-5 운연동 10-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5	6	국지	167	중1-42 운연동 16	중1-42 운연동 494-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연락골
변경	소로	3	5	6	국지	153	중1-42 운연동 16	중1-42 운연동 494-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주) ( )는 구역 내 도로에 관한 사항임

○ 도로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15	40 ~ 61.3	주간선	6,160 (402)	광 3-16	부천시계	자동차	87.7.20 (간도87-351)	산저
기정	소로	2	1	8	국지	323	- 만수동 703	- 만수동 59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산저
변경	소로	2	1	8	국지	323	- 만수동 703	- 만수동 69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중점 정정
기정	소로	3	1	6	국지	19	광2-15 만수동 810-13	소2-1 만수동 697-1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산저
변경	소로	3	1	6	국지	19	광3-15 만수동 810-13	소2-1 만수동 697-1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2	6	국지	41	소2-1 만수동 703	- 만수동 산102-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산저
기정	소로	3	3	4	국지	89	소2-1 만수동 703	- 만수동 705-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산저
기정	소로	3	1	6	국지	286 (284)	소2-17 서창동 613	- 운연동 73-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결재
기정	소로	3	2	6	국지	159	소3-1 운연동 65	소3-1 운연동 62-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결재
변경	소로	3	2	6	국지	159	소3-1 서창동 65	소3-1 서창동 62-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중점 정정
기정	중로	3	169	12	국지	(124)	-	-	일반 도로	-	제척
변경	중로	3	69	12	보조 간선	900 (124)	중로 1-325	시흥시계	일반 도로	인고63호 1995.4.6	오기 정정
기정	소로	3	1	6	국지	347	중3-169 운연동 343-7	운연동 357-1 시흥시계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제척
변경	소로	3	1	6	국지	347	중3-69 운연동 343-7	운연동 357-1 시흥시계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2	6	국지	45	중3-169 운연동 347	소3-1 운연동 348-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제척
변경	소로	3	2	6	국지	45	중3-69 운연동 347-3	소3-1 운연동 348-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3	6	국지	43	소3-1 운연동 350-8	- 운연동 333-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제척
기정	소로	2	2	8	국지	(107)	-	-	일반 도로	-	화랑
기정	소로	3	1	6	국지	69 (39)	소2-2 산곡동 산53-21	- 산곡동 산53-2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화랑
변경	소로	3	1	6	국지	69 (39)	소2-2 산곡동 산53-34	- 산곡동 산53-2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2	6	국지	36	소2-2 산곡동 산44	- 산곡동 산4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화랑

주) ( )는 구역 내 도로에 관한 사항임

○ 도로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	12~13	집산	468 (297)	- 십정동 138-12	대2-13 십정동 163-3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열우물
기정	소로	1	1	10~135	국지	653 (241)	대2-35 -	중3-1 십정동 147-2	일반 도로	-	열우물
기정	소로	1	2	10	국지	304 (190)	- 십정동 98-1	소1-1 십정동 77-1	일반 도로	-	열우물
기정	소로	2	1	8	국지	149	중3-1 십정동 139-2	소1-1 십정동 140-2	일반 도로	-	열우물
기정	소로	2	2	8	국지	667	소1-1 십정동 24-1	소1-1 십정동 24-1	일반 도로	-	열우물
변경	소로	2	2	8	국지	667	소1-1 십정동 555	소1-1 십정동 24-3	일반 도로	-	기·중점 정정,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2	3	8	국지	131	소1-2 십정동 66-1	소2-2 십정동 73	일반 도로	-	열우물
기정	소로	2	4	8	국지	78	소2-2 십정동 25	소2-2 십정동 24-3	일반 도로	-	열우물
변경	소로	2	4	8	국지	78	소2-2 십정동 25	소2-2 십정동 24-6	일반 도로	-	중점 정정
기정	소로	2	5	8	국지	454	중3-1 십정동 147-2	소2-2 십정동 8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열우물
기정	소로	3	1	6	국지	289	소2-2 십정동 153	소2-5 십정동 14	일반 도로	-	열우물
변경	소로	3	1	6	국지	289	소2-2 십정동 23	소2-5 십정동 14	일반 도로	-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2	6	국지	68	소2-5 십정동 158	소3-1 십정동 153	일반 도로	-	열우물
변경	소로	3	2	6	국지	78	소2-5 십정동 158	소3-1 십정동 153	일반 도로	-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3	6	국지	50	소2-5 십정동 12	- 십정동 9	일반 도로	-	열우물
기정	소로	3	4	6	국지	99	소2-2 십정동 43-9	- 십정동 43-1	일반 도로	-	열우물
기정	소로	3	5	6	국지	51	소2-5 십정동 149-3	소3-1 십정동 150-2	일반 도로	-	열우물
기정	소로	3	6	6	국지	98	소2-2 십정동 21	소3-1 십정동 19-2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열우물
기정	소로	3	7	6	국지	181	소1-2 십정동 61-1	소2-2 십정동 553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열우물
기정	소로	3	8	6	국지	87	소2-2 십정동 36	소2-2 십정동 33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열우물
기정	소로	3	9	6	국지	136	소2-4 십정동 29-8	소3-8 십정동 35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열우물
기정	소로	3	10	3	특수	34	소2-2 십정동 27	- 십정동 56-1	보행자 전용	-	열우물
기정	소로	3	11	6	국지	74	중3-1 십정동 138-22	소2-1 십정동 140-2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열우물
변경	소로	3	11	6	국지	74	중3-1 십정동 138-53	소2-1 십정동 140-2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12	6	국지	183	소1-2 십정동 95-1	- 십정동 91-5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열우물
신설	소로	3	13	4	국지	144	소3-7 십정동 61-1	소1-2 십정동 548-1	일반 도로	-	열우물 (도로신설)

주) ( )는 구역 내 도로에 관한 사항임

○ 도로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	6	국지	532	- 독실동116-3	- 독실동18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독실
변경	소로	3	1	6	국지	531	- 독실동116-3	- 독실동18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형변경 및 연장축소
기정	소로	3	2	6	국지	62	소3-1 독실동162-3	- 독실동16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독실
변경	소로	3	2	6	국지	62	소3-1 독실동162-3	- 독실동16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4	6	국지	474 (15)	소3-1 -	- 독실동 197-3	일반 도로	인고48호 2005.4.4	독실 (기재누락)
기정	중로	2	508	15	집산	984 (9)	중2-135 -	소3-1 -	일반 도로	계양구 고시 제42호 2007.12.27	이화 (기재누락)
기정	소로	2	1	8	국지	601	소1-1 이화동 43-4	김포시계 이화동 224-2	일반 도로	인고116호 2006.7.18	이화
변경	소로	2	1	8	국지	601	중2-508 이화동 43-4	김포시계 이화동 224-2	일반 도로	인고116호 2006.7.18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1	6	국지	410	소1-1 이화동 43-4	소2-1 이화동 214-4	일반 도로	인고116호 2006.7.18	이화
변경	소로	3	1	6	국지	413	중2-508 이화동 43-4	소2-1 이화동 214-4	일반 도로	인고116호 2006.7.18	기점 정정,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2	6	국지	170	소2-1 이화동 218-3	소3-14 이화동 237-1	일반 도로	인고116호 2006.7.18	이화
기정	소로	3	3	6	국지	236	- 이화동 222-9	- 이화동 산24-1	일반 도로	인고116호 2006.7.18	이화
기정	소로	3	4	6	국지	220	소3-1 이화동 275	- 이화동 272	일반 도로	인고116호 2006.7.18	이화
기정	소로	3	5	6	국지	167	소3-1 이화동 43-3	소3-11 이화동 265-1	일반 도로	인고116호 2006.7.18	이화
변경	소로	3	5	6	국지	167	소3-1 이화동 43-3	소3-11 이화동 256-1	일반 도로	인고116호 2006.7.18	중점 정정
기정	소로	3	6	6	국지	36	소2-1 이화동 43-3	소3-5 이화동 254-6	일반 도로	인고116호 2006.7.18	이화
기정	소로	3	7	6	국지	68	소3-1 이화동 251-1	소3-5 이화동 254-3	일반 도로	인고116호 2006.7.18	이화
기정	소로	3	8	6	국지	98	소3-7 이화동 253-1	소3-11 이화동 255-1	일반 도로	인고116호 2006.7.18	이화
변경	소로	3	8	6	국지	99	소3-7 이화동 253-1	소3-11 이화동 255-1	일반 도로	인고116호 2006.7.18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9	6	국지	100	소3-1 이화동 산53-1	소3-11 이화동 249	일반 도로	인고116호 2006.7.18	이화
변경	소로	3	9	6	국지	100	소3-1 이화동 산29-4	소3-11 이화동 249	일반 도로	인고116호 2006.7.18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10	6	국지	65	소3-1 이화동 산29-1	소3-9 이화동 산29-1	일반 도로	인고116호 2006.7.18	이화
기정	소로	3	11	6	국지	127	소2-1 이화동 192-3	소3-12 이화동 248-12	일반 도로	인고116호 2006.7.18	이화

주) ( )는 구역 내 도로에 관한 사항임

○ 도로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2	6	국지	126	소2-1 이화동 248-25	소3-1 이화동 산28-2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이화
변경	소로	3	12	6	국지	126	소2-1 이화동 248-25	소3-1 이화동 237-48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중점 정정
기정	소로	3	13	6	국지	73	소2-1 이화동 246-2	소3-12 이화동 산29-1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이화
기정	소로	3	14	6	국지	140	소3-1 이화동 241-3	소3-3 이화동 237-2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이화
기정	소로	3	15	6	국지	55	소3-1 이화동 243	소3-2 이화동 230-3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이화
기정	소로	3	16	6	국지	81	소3-2 이화동 239-1	소3-3 이화동 235-2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이화
변경	소로	3	16	6	국지	81	소3-2 이화동 239-1	소3-3 이화동 235-2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17	6	국지	78	소3-2 이화동 230-26	소3-3 이화동 230-2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이화
기정	소로	3	18	6	국지	53	소3-3 이화동 226-4	- 이화동 226-4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이화
기정	소로	3	19	6	국지	31	소3-3 이화동 산23	- 이화동 산23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이화
신설	소로	3	20	4	국지	81	소3-14 이화동 237-45	- 이화동 237-13	일반 도로	-	이화 (도로신설)
기정	대로	3	37	25~ 38	주간선	6,474 (108)	광3-9 계산동	김포시계 장기동	일반 도로	1970.2.8 (건고427)	오류
기정	소로	2	2	8	국지	430	대3-37 오류동 178-3	- 오류동 125-4	일반 도로	-	오류
기정	소로	3	1	6	국지	80	대3-37 오류동 150-5	- 오류동 152-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오류
기정	소로	3	2	6	국지	113	대3-37 오류동 160-3	소2-2 오류동 산20-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오류
기정	소로	3	3	6	국지	90	소2-2 오류동 137-1	- 오류동 13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오류
기정	소로	3	4	6	국지	82	소2-2 오류동 178-3	소3-3 오류동 13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오류
기정	소로	3	5	6	국지	112	소2-2 오류동 118-1	소3-6 오류동 120-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오류
기정	소로	3	6	6	국지	151	소2-2 오류동 120-7	- 오류동 100-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오류
기정	소로	3	7	6	국지	174	소3-6 오류동 97	소3-9 오류동 94-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오류
변경	소로	3	7	6	국지	174	소3-6 오류동 97-3	소3-9 오류동 94-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주) ( )는 구역 내 도로에 관한 사항임

○ 도로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8	6	국지	53	소3-6 오류동 96	소3-7 오류동 95-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오류
변경	소로	3	8	6	국지	53	소3-6 오류동 96	소3-7 오류동 95-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종점 정정
기정	소로	3	9	6	국지	260	소2-2 오류동 94-3	- 오류동 27-8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오류
변경	소로	3	9	6	국지	260	소2-2 오류동 94-1	- 오류동 27-8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10	6	국지	122	소3-9 오류동 22-5	- 오류동 27-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오류
기정	소로	3	11	6	국지	40	소3-9 오류동 24-3	소3-9 오류동 2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오류
기정	소로	3	12	6	국지	194 (71)	소2-2 오류동 산8-1	소2-2 오류동 산8-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오류
기정	소로	3	13	6	국지	9	소2-2 오류동 122	- 오류동 12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오류
기정	대로	3	37	25 ~ 38	주간선	6,474 (74)	광3-9 계산동	김포시계 장기동	일반 도로	1970.2.8 (건고427)	갈현2
기정	소로	3	1	6	국지	267	대3-37 갈현동 산38-1	- 갈현동 4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갈현2
변경	소로	3	1	6	국지	269	대3-37 갈현동 산38-1	- 갈현동 4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2	6	국지	147	소3-1 갈현동 45-1	소3-1 갈현동 52-8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갈현2
기정	소로	3	3	6	국지	190	대3-37 갈현동 81-5	대3-37 갈현동 81-8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갈현2
기정	소로	2	4	8	국지	310 (304)	갈현동 144-13	갈현동 113-2	일반 도로	-	갈현
변경	소로	2	4	8	국지	251 (246)	갈현동 96-12	갈현동 산68-4	일반 도로	-	기점 정정, 도로연장 변경, 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1	6	국지	107	소2-4 갈현동 113-2	- 갈현동 115-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갈현
변경	소로	3	1	6	국지	156	소2-4 갈현동 산68-4	- 갈현동 115-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변경, 도로연장 변경
기정	소로	3	2	6	국지	77	소2-4 갈현동 101-4	- 갈현동 103-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갈현
변경	소로	3	2	6	국지	77	소2-4 갈현동 101-4	- 갈현동 103-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종점 정정
기정	소로	3	3	6	국지	65	소2-4 갈현동 101-8	소3-2 갈현동 101-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갈현
신설	소로	3	4	6	국지	40	소3-1 갈현동 113-14	- 갈현동 113-6	일반 도로	-	갈현 (도로신설)

주) ( )는 구역 내 도로에 관한 사항임

○ 도로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35	15	보조 간선	6,520 (183)	대1-19	이화동구역계	일반 도로	1990.7.20 (인고90-90)	선주지2
기정	중로	3	327	12	국지	319 (41)	중2-135	소2-2	일반 도로	계양구 고시 제2012-46호 2012.10.19	선주지2
기정	소로	3	1	6	국지	380	중2-135 이화동 122-35	중2-135 이화동 122-6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2
기정	소로	3	2	6	국지	165	중2-135 이화동 122-41	소3-1 이화동 122-18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2
기정	소로	2	1	8	국지	615 (219)	소3-8 -	- 선주지동 163-2	일반 도로	-	선주지
변경	소로	2	1	8	국지	615 (219)	소3-8 -	- 선주지동 163	일반 도로	-	중점 정정
기정	소로	2	2	8	국지	1,180	소2-1 선주지동 131-4	소2-1 선주지동 196-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변경	소로	2	2	8	국지	1,188	소2-1 선주지동 131-4	소2-1 선주지동 196-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2	95	8	국지	866 (9)	소2-2 -	- 노오지동 62	일반 도로	계양구 고시 제2008-56호 2008.10.30	선주지 (기재누락)
기정	소로	3	1	6	국지	187	소2-1 선주지동 183-1	소2-2 선주지동 122-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변경	소로	3	1	6	국지	187	소2-1 선주지동 183-1	소2-2 선주지동 122-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2	6	국지	68	소2-1 선주지동 128	소3-3 선주지동 129-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기정	소로	3	3	6	국지	130	소2-2 선주지동 129-1	소3-1 선주지동 126-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변경	소로	3	3	6	국지	128	소2-2 선주지동 129-1	소3-1 선주지동 126-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4	6	국지	94	소2-2 선주지동 123-2	소3-1 선주지동 12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기정	소로	3	5	6	국지	37	소2-2 선주지동 42-2	- 선주지동 41-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기정	소로	3	6	6	국지	222	소3-1 선주지동 120-1	소3-10 선주지동 114-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변경	소로	3	6	6	국지	223	소3-1 선주지동 120-1	소3-10 선주지동 114-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7	6	국지	89	소2-2 선주지동 116	소3-6 선주지동 119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변경	소로	3	7	6	국지	86	소2-2 선주지동 116	소3-6 선주지동 119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8	6	국지	68	소2-2 선주지동 122-5	소3-6 선주지동 121-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기정	소로	3	9	6	국지	83	소3-10 선주지동 114-2	소3-6 선주지동 114-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변경	소로	3	9	6	국지	83	소3-10 선주지동 114-2	소3-6 선주지동 114-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주) ( )는 구역 내 도로에 관한 사항임

○ 도로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0	6	국지	313	소2-1 선주지동 185-1	소2-2 선주지동 106-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기정	소로	3	11	6	국지	287	소2-2 선주지동 196-4	소2-2 선주지동 101-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변경	소로	3	11	6	국지	290	소2-2 선주지동 196-4	소2-2 선주지동 101-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12	6	국지	52	소3-10 선주지동 114-1	소3-11 선주지동 20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기정	소로	3	13	6	국지	70	소2-2 선주지동 201-1	소3-11 선주지동 20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기정	소로	3	14	6	국지	53	소3-10 선주지동 106-5	소3-11 선주지동 20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기정	소로	3	15	6	국지	61	소2-2 선주지동 195-1	소3-11 선주지동 200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기정	소로	3	16	6	국지	30	소2-2 선주지동 103-3	소3-11 선주지동 103-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기정	소로	3	17	6	국지	83	소2-2 선주지동 293-1	소3-10 선주지동 108-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변경	소로	3	17	6	국지	83	소2-2 선주지동 107-8	소3-10 선주지동 108-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18	6	국지	189	소2-2 선주지동 48	소2-2 선주지동 49-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기정	소로	3	19	6	국지	44	소2-2 선주지동 79-4	- 선주지동 79-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기정	소로	3	20	6	국지	38	소3-6 선주지동 111	소3-17 선주지동 11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기정	소로	1	6	10	국지	(82)	-	-	일반 도로	결정일 확인	목상
기정	소로	3	1	6	국지	252	소1-6 목상동 106-1	소1-6 목상동 150-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목상
변경	소로	3	1	6	국지	253	소1-6 목상동 106-1	소1-6 목상동 150-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2	6	국지	138	소1-6 목상동 95-3	- 목상동 89-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목상
기정	소로	3	1	6	국지	415	- 대남동 74-2	- 대남동 산23-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대남6
기정	소로	3	2	6	국지	365	소3-1 대남동 64-4	소3-1 대남동 6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대남6
기정	소로	3	3	6	국지	63	소3-2 대남동55-7	소3-2 대남동 60-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대남6
기정	소로	3	4	6	국지	26	소3-2 대남동 68-1	- 대남동 66-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대남6
변경	소로	3	4	6	국지	26	소3-1 대남동 68-1	- 대남동 66-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주) ( )는 구역 내 도로에 관한 사항임

○ 도로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	6	국지	840	- 대남동 81-11	- 대남동 112-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대남123
변경	소로	3	1	6	국지	845	- 대남동 81-11	- 대남동 112-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2	6	국지	164	소1-5 대남동 103-73	소3-1 대남동 103-8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대남123
기정	소로	3	3	6	국지	71	소3-1 대남동 103-57	- 대남동 산41-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대남123
기정	소로	3	4	6	국지	44	소3-1 대남동 103-66	소3-2 대남동 103-7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대남123
기정	소로	3	5	6	국지	86	소3-1 대남동 77-6	소3-1 대남동 77-1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대남123
변경	소로	3	5	6	국지	94	소3-1 대남동 77-6	소3-1 대남동 77-1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6	6	국지	164	소3-1 대남동 78-2	소3-1 대남동 77-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대남123
변경	소로	3	6	6	국지	165	소3-1 대남동 78-11	소3-1 대남동 77-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7	6	국지	84	소3-1 대남동 76-8	- 대남동 77-2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대남123
기정	소로	3	8	6	국지	48	소3-1 대남동 76-3	- 대남동 75-1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대남123
변경	소로	3	8	6	국지	50	소3-1 대남동 76-3	- 대남동 75-1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9	6	국지	262	소3-1 대남동 82-49	- 대남동 81-39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대남123
기정	소로	1	3	10	국지	740 (3)	대3-37 굴현동 451-499	소3-1 대남동 86-13	일반	00. 01. 22	대남5
기정	소로	1	5	10	국지	1,968 (265)	소1-6 대남동 산70-15	- 굴현동 451-371	일반	99. 05. 24	대남5
기정	소로	3	1	6	국지	684	소1-5 대남동 산10	소3-2 대남동100-2	일반	인고98호 2006.6.5	대남5
기정	소로	3	2	6	국지	183 (95)	소1-5 -	소3-1 -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대남5
변경	소로	3	2	6	국지	183 (93)	소1-5 -	소3-1 -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연장 축소,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3	6	국지	120	소3-1 대남동 103-80	소3-2 대남동 99-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대남5
변경	소로	3	3	6	국지	119	소3-1 대남동 103-80	소3-2 대남동 99-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연장 축소,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4	6	국지	108	소3-2 대남동 산5-1	소3-3 대남동 103-6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대남5
변경	소로	3	4	6	국지	108	소1-5 대남동 산5-5	소3-3 대남동 103-6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주) ( )는 구역 내 도로에 관한 사항임

○ 도로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34	30.6~250	도시 고속	31,881 (575)	- 운서동 1681	하야동14-6 (신공항고속도로)	자동차	건고94-46 1994.2.28	상야
기정	대로	3	36	25	주간선	3,388 (648)	고촌구역계 하야동 70	서울구역계 동양동 89	일반 도로	건고 959 1990.12.28	상야
기정	소로	1	1	10	국지	450	대3-36 상야동 141-7	- 평동 52-7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1	2	10	국지	436	대3-36 하야동 64-46	소3-18 평동 46-2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2	1	8	국지	460	대3-36 하야동 10-6	대3-36 상야동 136-10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2	2	8	국지	456	소3-18 평동 46-1	소3-8 평동 38-2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변경	소로	2	2	8	국지	456	소3-15 평동 46-1	소3-4 평동 38-2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기·중점 정정
기정	소로	2	3	8	국지	395	소1-1 평동 89-19	소1-1 평동 42-1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2	4	8	국지	474	소1-2 평동 46-11	소2-2 평동 38-2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2	5	6	국지	340	대3-36 상야동 11-4	소1-1 상야동 147-3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변경	소로	2	5	8	국지	340	대3-36 상야동 11-4	소1-1 상야동 147-3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폭원 정정
기정	소로	2	6	6	국지	286	대3-36 상야동 40-5	소1-1 상야동 158-23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변경	소로	2	6	8	국지	286	대3-36 상야동 40-5	소1-1 상야동 158-23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폭원 정정
기정	소로	2	7	8	국지	547 (16)	소2-1 -	- 하야동 37-4	일반 도로	계양도2호 2008.01.15	상야지구 (기재누락)
기정	소로	3	1	6	국지	110	소2-3 평동 102-2	소2-3 평동 42-4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3	2	6	국지	112	소2-3 평동 96-10	소3-1 평동 95-2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3	3	6	국지	25	소2-3 평동 92-22	- 평동 52-1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3	4	6	국지	191	소1-1 평동 54-11	소2-2 평동 37-4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3	5	6	국지	98	소1-1 평동 40-1	- 평동 39-1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변경	소로	3	5	6	국지	98	소1-1 평동 40-8	- 평동 39-1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6	6	국지	70	소2-2 평동 86	소2-4 평동 69-3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3	7	6	국지	60	소2-2 평동 85-6	소2-4 평동 48-10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3	8	6	국지	76	소2-2 평동 19-11	- 평동 19-18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3	9	6	국지	100	소3-8 평동 19-22	소3-10 평동 19-24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변경	소로	3	9	6	국지	100	소3-8 평동 19-22	소3-10 평동 19-20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중점 정정

주) ( )는 구역 내 도로에 관한 사항임

○ 도로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0	6	국지	55	소2-2 평동 3-6	- 평동 3-9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3	11	6	국지	112	소2-2 평동 1-7	소3-10 평동 3-12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3	12	6	국지	66	소2-2 평동 48-1	소2-4 평동 46-12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폐지	소로	3	13	4	특수	50	소2-2 평동 46-10	- 평동 46-19	보행자	인고16호 2006.7.18	상야 (도로폐지)
기정	소로	3	14	6	국지	44	소3-12 평동 46-14	- 평동 46-21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변경	소로	3	14	6	국지	44	소3-12 평동 46-14	- 평동 46-21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15	6	국지	130	소1-2 평동 47-15	소2-2 평동 46-1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3	16	6	국지	250	소1-2 하이동 64-10	- 하이동 64-47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폐지	소로	3	17	6	국지	81	소1-2 하이동 64-48	소3-16 하이동 45-1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도로폐지)
기정	소로	3	18	6	국지	57	소3-17 하이동 64-8	소3-16 하이동 64-10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변경	소로	3	18	6	국지	95	소3-16 하이동 64-58	소3-16 하이동 64-10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기점 변경, 도로선형 변경
기정	소로	3	19	6	국지	117	소1-2 하이동 64-49	소3-20 하이동 64-14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3	20	6	국지	172	소1-2 하이동 64-21	소3-22 하이동 64-29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3	21	6	국지	38	소3-22 하이동 64-33	소3-20 하이동 64-24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3	22	6	국지	351	소1-2 하이동 64-36	소3-19 하이동 64-49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3	23	6	국지	71	대3-36 하이동 40-22	- 하이동 40-25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변경	소로	3	23	6	국지	71	대3-36 하이동 40-22	- 하이동 40-31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중점 정정
기정	소로	3	24	6	국지	150	소2-1 하이동10-14	소3-24 하이동 34-3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변경	소로	3	24	6	국지	150	소2-1 하이동10-22	소3-24 하이동 34-3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25	6	국지	78	소2-1 상야동 17-2	- 상야동 18-4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3	26	6	국지	157	대3-36 상야동 35-9	소2-5 상야동 12-2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3	27	6	국지	126	소1-1 상야동169-5	소2-5 상야동15-1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소로	3	28	6	국지	206	소1-1 상야동 168	소2-6 상야동 163-19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변경	소로	3	28	6	국지	206	소1-1 상야동 168	소2-6 상야동 163-34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중점 정정
기정	소로	3	29	6	국지	172	소1-1 상야동 154	소3-28 상야동 39-1	일반 도로	인고16호 2006.7.18	상야

주) ( )는 구역 내 도로에 관한 사항임

○ 도로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6	10	국지	(60)	-	-	일반 도로	-	방축
기정	소로	3	1	6	국지	496	- 방축동 10	- 방축동 산4-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방축
기정	소로	3	2	6	국지	50	소1-6 방축동 134	소3-1 방축동 1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방축
기정	소로	2	18	8	국지	(302)	-	-	일반 도로	81. 11. 2 -	송현
변경	소로	2	18	8	국지	(311)	-	-	일반 도로	81. 11. 2 -	도로선형 일부변경
기정	소로	3	1	6	국지	230	소2-18 박촌동 214-1	소2-18 박촌동 225-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송현
기정	소로	3	2	6	국지	70	소2-18 박촌동 225-2	소3-1 박촌동 213-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송현
기정	소로	3	1	6	국지	360	광3-9 박촌동 280-41	소3-1 박촌동286-1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마기묘
기정	소로	3	2	4	국지	110	소3-1 박촌동 287-34	소3-1 박촌동 288-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마기묘
기정	중로	2	135	15	보조 간선	6,250 (415)	대1-19	이화동구역계	일반 도로	90. 7. 20 (인고90-90)	이화2
기정	소로	3	1	6	국지	492	중2-135 이화동23-26	- 이화동 23-49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이화2
기정	소로	3	2	6	국지	64	소3-1 이화동23-30	- 이화동23-4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이화2
기정	소로	3	3	6	국지	120	중2-135 선주지동 2-23	- 선주지동 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이화2
기정	소로	3	4	6	국지	170	중2-135 이화동 52-18	중2-135 이화동 52-9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이화2
기정	소로	3	5	6	국지	38	중2-135 선주지동 12-5	- 선주지동 20-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이화2
기정	대로	1	22	35	보조 간선	2,743 (208)	광3-9	대1-59	일반 도로	75. 5. 16 (건고 75)	하동
기정	소로	3	1	6	국지	352	대1-22 검암동 446-6	- 검암동 453-9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하동
변경	소로	3	1	6	국지	352	대1-22 검암동 445-5	- 검암동 453-9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2	6	국지	367	소3-1 검암동 448-5	소3-1 검암동 454-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하동
변경	소로	3	2	6	국지	367	- 검암동 425-8	소3-1 검암동 454-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3	6	국지	205	소3-1 검암동 447-3	소3-2 검암동 454-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하동
기정	소로	3	4	6	국지	52	소3-2 검암동 448-10	소3-3 검암동 454-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하동
변경	소로	3	4	6	국지	52	소3-2 검암동 448-11	소3-3 검암동 454-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5	6	국지	23	소3-1 검암동 454-7	소3-3 검암동 454-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하동

주) ( )는 구역 내 도로에 관한 사항임

○ 도로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6	6	국지	35	소3-1 검암동 443-2	- 검암동 444-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하등 (도로폐지)
기정	소로	3	7	6	국지	110	소3-1 검암동 443-1	소3-1 검암동 45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하등
기정	소로	3	8	6	국지	139	소3-1 검암동 459-1	소3-1 검암동 459-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하등
기정	소로	3	9	6	국지	69	대1-22 검암동 429-1	- 검암동 446-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하등
변경	소로	3	9	6	국지	69	대1-22 검암동 487-56	- 검암동 446-5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폐지	소로	3	10	6	국지	57	대1-22 검암동 421	소3-9 검암동 429-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하등 (도로폐지)
신설	중로	1	141	20-38	주간선	13,723 (163)	대2-61	서측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인고182호 2000.10.14	사천 (신설)
기정	소로	3	1	6	국지	363	중2-135 사천동 106-10	- 사천동 산43-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사천
변경	소로	3	1	6	국지	329	중1-141 사천동 112-2	- 사천동 산43-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연장 및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2	6	국지	247	소3-1 사천동 111-3	- 사천동 99-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사천
변경	소로	3	2	6	국지	232	중1-141 사천동 111-3	- 사천동 99-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연장 및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3	6	국지	188	중2-135 사천동 63	- 사천동 산35-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사천
변경	소로	3	3	6	국지	127	중1-141 사천동 94	- 사천동 산35-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연장 및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4	6	국지	90	소3-3 사천동 산35-4	- 사천동 90-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사천
기정	중로	1	57	20-33	보조 간선	3,500 (62)	대3-17	대2-29	일반 도로	68.10.23 (건고68-8)	다려방
기정	소로	3	1	6	국지	721	중1-57 석남동 322-12	중1-57 석남동 329-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다려방
변경	소로	3	1	6	국지	721	중1-57 석남동 322-12	소2-180 석남동 329-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중점 정정
기정	소로	3	2	6	국지	164	중1-57 석남동 326	소3-1 석남동 산21-4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다려방
변경	소로	3	2	6	국지	164	중1-57 석남동 326	소3-1 석남동 산21-7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중점 정정
기정	소로	3	3	6	국지	35	소3-1 석남동 322-2	소3-2 석남동 322-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다려방
변경	소로	3	3	6	국지	35	소3-1 석남동 322-56	소3-2 석남동 322-56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중점 정정
기정	소로	3	4	6	국지	57	소3-2 석남동 329-1	소3-1 석남동 329-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다려방
변경	소로	3	4	6	국지	57	소3-2 석남동 329-18	소3-1 석남동 329-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기점 정정
기정	소로	3	5	6	국지	72	소3-1 석남동 산23-11	소3-1 석남동 산17-2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다려방
변경	소로	3	5	6	국지	72	소3-1 석남동 산23-11	소3-1 석남동 산17-3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중점 정정

주) ( )는 구역 내 도로에 관한 사항임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 3-1	소로 3-1	•기점변경 선학동 136-1 → 선학동 136-2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간도장
소로 3-3	소로 3-3	•중점변경 선학동 137-1 → 선학동 137-12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간도장
소로 3-5	소로 3-5	•기점변경 선학동 134-2 → 선학동 134-19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간도장
소로 3-2	소로 3-2	•기점변경 구월동 653-2 → 구월동 653-16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경신
소로 3-4	소로 3-4	•기점변경 구월동 638 → 구월동 638-1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경신
소로 3-5	소로 3-5	•도로 확장 연장 변경 (L=98m → 108m) •중점변경 수산동 75-8 → 수산동 81-3	•주거지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로 확장에 따른 연장 및 중점 변경	경신
소로 3-6	소로 3-6	•중점변경 소 3-6 → 소 3-2	•도로 중점 오기에 의한 정정	경신
소로 3-8	소로 3-8	•중점변경 수산동 64-2 → 수산동 64-4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경신
소로 3-8	소로 3-8	•중점변경 수산동 271-1 → 수산동 262-7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냉정
소로 3-11	소로 3-11	•기점변경 수산동 297 → 수산동 294-1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냉정
소로 3-2	소로 3-2	•기점 변경 수산동 359 → 수산동 359-1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장 변경 (L=62m → 61m)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남발촌
소로 3-3	소로 3-3	•중점 변경 수산동 365 → 수산동 365-1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남발촌
소로 2-1	소로 2-1	•중점변경 수산동 549 → 수산동 549-2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능골
소로 3-1	소로 3-1	•기점변경 수산동 338-4 → 수산동 338-9 •중점변경 수산동 338-1 → 수산동 338-5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능골
소로 3-2	소로 3-2	•기점변경 수산동 514-2 → 수산동 514-1 •도로선형 일부변경 폭원, 연장 변경없음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능골
소로 3-7	소로 3-7	•기점변경 소 3-1 → 소 3-4 수산동 540-3 → 수산동 538-12	•도로 기점 오기에 의한 정정	능골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계속)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 2-1	소로 2-1	•폭원변경 8m → 8~10m •중점변경 - → 중 3-182	•폭원 및 중점 오기에 의한 정정	도림1
소로 3-1	소로 3-1	•중점변경 도림동 110-17 → 도림동 110-24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도림1
소로 3-7	소로 3-7	•중점변경 도림동 31-5 → 도림동 31-17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도림1
소로 3-10	소로 3-10	•기점변경 도림동 220-2 → 도림동 220-5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도림1
소로 3-12	소로 3-12	•도로선형 일부 변경 폭원, 연장 변경없음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도림1
소로 3-13	소로 3-13	•중점변경 도림동 201-9 → 도림동 202-10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도림1
소로 3-17	소로 3-17	•기점변경 도림동 95-10 → 도림동 96-15	•도로 기점 오기에 의한 정정	도림1
소로 3-18	소로 3-18	•중점변경 도림동 96-4 → 도림동 96-10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도림1
소로 3-1	소로 3-1	•기점변경 소2-1 → 중3-307	•기점 기재 오류 정정에 의한 변경	주적
소로 3-2	소로 3-2	•기점변경 도림동 350-4 → 도림동 310-6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주적
소로 3-3	소로 3-3	•기점변경 도림동 342-2 → 도림동 310-6 •중점변경 소2-1 → 중3-307	•지적분할에 따른 기점 정정 및 중점 기재 오류 정정에 의한 변경	주적
소로 3-4	소로 3-4	•기점변경 도림동 342-2 → 도림동 310-6 •중점변경 도림동 343-9 → 도림동 310-6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주적
소로 3-5	소로 3-5	•기점변경 도림동 353-5 → 도림동 310-6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주적
소로 3-2	소로 3-2	•기점변경 논현동 52-1 → 논현동 52-2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동년
소로 3-3	소로 3-3	•기점변경 논현동 56-2 → 논현동 56-3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동년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계속)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중로 1-10	중로 1-10	•도로기능 기재누락 정정	•도로기능 기재누락에 의한 정정	수현
소로 2-2	소로 2-2	•도로선형 일부 변경 폭원, 연장 변경없음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수현
소로 3-3	소로 3-3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장 변경 (L=232m → 231m)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수현
소로 2-1	소로 2-1	•기점변경 장수동 46-4 → 장수동 46-12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만의골
소로 3-2	소로 3-2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장 변경 (L=380m → 375m) •기점변경 장수동 123 → 장수동 123-4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 선형 일부변경	만의골
소로 3-3	소로 3-3	•기점변경 장수동 115 → 장수동 115-7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만의골
소로 3-4	소로 3-4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장 변경 (L=109m → 110m)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만의골
소로 3-6	-	•도로폐지 •폭원 4m •연장 43m	•경관광장 확대에 따른 도로 폐지	만의골
소로 3-7	-	•도로폐지 •폭원 4m •연장 21m	•경관광장 확대에 따른 도로 폐지	만의골
소로 3-1	소로 3-1	•도로선형 일부변경 폭원, 연장 변경없음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락골
소로 3-4	소로 3-4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장 변경 (L=141m → 146m)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락골
소로 3-5	소로 3-5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장 변경 (L=167m → 153m)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락골
소로 2-1	소로 2-1	•중점변경 만수동 505 → 만수동 605	•도로 중점 오기에 의한 정정	산저
소로 3-1	소로 3-1	•기점변경 광 2-15 → 광 3-15	•도로 기점 오기에 의한 정정	산저
소로 3-2	소로 3-2	•기점변경 운연동 65 → 사창동 65 •중점변경 운연동 62-2 → 사창동 62-2	•도로 기·중점 오기에 의한 정정	결재
중로 3-169	중로 3-69	•도로명 변경 중로 3-169 → 중로 3-69 •기능변경 국지도로 → 보조선도로 •기점 기재 : 중로 1-325 •중점 기재 : 시흥시계	•도로명 및 기능 오기에 의한 정정 및 기·중점 기재누락 정정에 의한 변경	제척
소로 3-1	소로 3-1	•기점변경 중 3-169 → 중 3-69	•기점 도로 변경 반영에 의한 변경	제척
소로 3-2	소로 3-2	•기점변경 중 3-169 → 중 3-69 운연동 347 → 운연동 347-3	•기점 도로 변경 반영 및 지적 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제척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계속)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 3-1	소로 3-1	•기점변경 산목동 산53-21 → 산목동 산53-34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회랑
소로 2-2	소로 2-2	•기점변경 십정동 24-1 → 십정동 555 •중점변경 십정동 24-1 → 십정동 24-3 •도로선형 일부 변경 폭원, 연장 변경없음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열우물
소로 2-4	소로 2-4	•중점변경 십정동 24-3 → 십정동 24-6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열우물
소로 3-1	소로 3-1	•기점변경 십정동 153 → 십정동 23	•도로 기점 오기에 의한 기재 오류 정정	열우물
소로 3-2	소로 3-2	•도로선형 일부 변경 연장 변경 (L=68m → 78m)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열우물
소로 3-11	소로 3-11	•기점변경 십정동 138-22 → 십정동 138-53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 정에 의한 변경	열우물
-	소로 3-13	•도로 신설 B=4m, L=연장 144m	•구역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로 신설	열우물
소로 3-1	소로 3-1	•도로선형 일부 변경 연장변경 (L=532m → 531m)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및 연장 축소에 의한 변경	독실
소로 3-2	소로 3-2	•도로선형 일부 변경 폭원, 연장 변경없음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독실
소로 3-4	소로 3-4	•도로 기재누락 정정	•도로 기재누락에 의한 정정	독실
중로 2-508	중로 2-508	•도로 기재누락 정정	•도로 기재누락에 의한 정정	이화
소로 2-1	소로 2-1	•기점변경 소로 1-1 → 중로 2-508	•기점 기재 오류정정에 의한 변경	이화
소로 3-1	소로 3-1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장 변경 (L=410m → 413m) •기점변경 소로 1-1 → 중로 2-508	•기점 기재 오류정정에 의한 변경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이화
소로 3-5	소로 3-5	•중점변경 이화동 265-1 → 이화동 256-1	•도로 중점 오기에 의한 기재 오류 정정	이화
소로 3-8	소로 3-8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장 변경 (L=98m → 99m)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이화
소로 3-9	소로 3-9	•기점변경 이화동 산53-1 → 이화동 산29-4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이화
소로 3-12	소로 3-12	•중점변경 이화동 산28-2 → 이화동 237-48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이화
소로 3-16	소로 3-16	•도로선형 일부 변경 폭원, 연장 변경없음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이화
-	소로 3-20	•도로 신설 B=4m, L=81m	•구역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로 신설	이화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계속)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 3-7	소로 3-7	•기점변경 오류동 97 → 오류동 97-3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오류
소로 3-8	소로 3-8	•중점변경 오류동 95-5 → 오류동 95-2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오류
소로 3-9	소로 3-9	•기점변경 오류동 94-3 → 오류동 94-1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오류
소로 3-1	소로 3-1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장 변경 (L=267m → 269m)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갈현2
소로 2-4	소로 2-4	•기점변경 갈현동 144-13 → 갈현동 96-12 •연장변경 (L=304m → 246m) •중점변경 갈현동 113-2 → 갈현동 산68-4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소로 3-1호선 변경에 따른 연장 변경 및 중점 변경	갈현
소로 3-1	소로 3-1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장변경 (L=107m → 156m) •기점변경 갈현동 113-2 → 갈현동 산68-4	•소로 2-4호선(폭8m)의 건축물 저축으로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 저축구간을 소로 3-1호선(폭 6m)로 변경에 따른 연장 변경 및 중점 변경	갈현
소로 3-2	소로 3-2	•중점변경 갈현동 103-1 → 갈현동 103-3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갈현
-	소로 3-4	•도로 신설 •폭원 6m •연장 40m	•구역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로 신설	갈현
소로 2-1	소로 2-1	•중점변경 선주지동 163-2 → 선주지동 163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선주지
소로 2-2	소로 2-2	•도로선형 일부 변경 연장 변경 (L=1,180m → 1,188m)	•지구외 도로와의 연계를 위해 도로선형 일부변경	선주지
소로 2-95	소로 2-95	•도로 기재누락 정정	•도로 기재누락에 의한 정정	선주지
소로 3-1	소로 3-1	•도로선형 일부 변경 폭원, 연장 변경없음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선주지
소로 3-3	소로 3-3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장 변경 (L=130m → 128m)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선주지
소로 3-6	소로 3-6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장 변경 (L=222m → 223m)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선주지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계속)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 3-7	소로 3-7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장 변경 (L=89m → 86m)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선주지
소로 3-9	소로 3-9	•도로선형 일부 변경 폭원, 연장 변경없음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선주지
소로 3-11	소로 3-11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장 변경 (L=287m → 290m)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선주지
소로 3-17	소로 3-17	•기점변경 선주지동 293-1 → 선주지동 107-8	•도로 기점 오기에 의한 정정	선주지
소로 3-1	소로 3-1	•도로선형 일부 변경 연장 변경 (L=252m → 253m)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목상
소로 3-4	소로 3-4	•기점변경 소 3-2 → 소 3-1	•도로 기점 오기에 의한 정정	다남6
소로 3-1	소로 3-1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장 변경 (L=840m → 845m)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다남123
소로 3-5	소로 3-5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장 변경 (L=86m → 94m)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다남123
소로 3-6	소로 3-6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장 변경 (L=164m → 165m) •기점변경 다남동 78-2 → 다남동 78-11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다남123
소로 3-8	소로 3-8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장 변경 (L=48m → 50m)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다남123
소로 3-2	소로 3-2	•도로선형 일부 변경 연장 변경 (L=95m → 93m)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다남5
소로 3-3	소로 3-3	•도로선형 일부변경 연장 변경 (L=120m → 119m)	•소로 3-2호선 선형변경에 의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다남5
소로 3-4	소로 3-4	•기점변경 다남동 산5-1 → 다남동 5-5	•지적분할에 따른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다남5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계속)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 2-2	소로 2-2	•기점변경 소로 3-18 → 소로 3-15 •중점변경 소로 3-8 → 소로 3-4	•도로 기·중점 오기에 의한 기재 오류 정정	상야
소로 2-5	소로 2-5	•폭원 정정 B=6m → 8m	•도로 폭원 오기에 의한 기재 오류 정정	상야
소로 2-6	소로 2-6	•폭원 정정 B=6m → 8m	•도로 폭원 오기에 의한 기재 오류 정정	상야
소로 2-7	소로 2-7	•도로 기재누락 정정	•도로 기재누락에 의한 정정	상야
소로 3-5	소로 3-5	•기점변경 평동 40-1 → 평동 40-8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상야
소로 3-9	소로 3-9	•중점변경 평동 19-24 → 평동 19-20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상야
소로 3-13	-	•도로폐지 B=4m, L=50m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 폐지	상야
소로 3-14	소로 3-14	•도로선형 일부 변경 폭원, 연장 변경없음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상야
소로 3-17	-	•도로폐지 B=6m, L=81m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 폐지	상야
소로 3-18	소로 3-18	•도로선형 변경 연장 변경 (L=57m → 95m) •기점변경 소로 3-17 → 소로 3-16	•소로3-17호선의 폐지로 인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변경 및 그에 따른 기점 변경	상야
소로 3-23	소로 3-23	•중점변경 하야동 40-25 → 하야동 40-31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상야
소로 3-24	소로 3-24	•기점변경 하야동 10-14 → 하야동 10-22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상야
소로 3-28	소로 3-28	•중점변경 상0동 163-19 → 상0동 163-34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상야
소로 2-18	소로 2-18	•도로선형 일부 변경 연장 변경 (L=302m → 311m)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도로선형 일부변경	승현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계속)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 3-1	소로 3-1	•기점변경 검암동 446-6 → 검암동 445-5	•도로 기점 오기에 의한 정정	하동
소로 3-2	소로 3-2	•기점변경 검암동 448-5 → 검암동 425-8	•도로 기점 오기에 의한 정정	하동
소로 3-4	소로 3-4	•기점변경 검암동 448-10 → 검암동 448-11	•도로 기점 오기에 의한 정정	하동
소로 3-6	-	•도로폐지 •폭원 6m •연장 35m	•도로구역으로 노선 존치 불필요 하며,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하여 도로 폐지	하동
소로 3-9	소로 3-9	•기점변경 검암동 429-1 → 검암동 487-56	•도로 기점 오기에 의한 정정	하동
소로 3-10	-	•도로폐지 •폭원 6m •연장 57m	•도로구역으로 노선 존치 불필요 하며,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하여 도로 폐지	하동
-	중로1-141	•도로신설 •폭원 20-38m •연장 13,723m (163m)	•국가하천(아라천)에 의한 도로 변경으로 지구내 도로 신설	시천1
소로 3-1	소로 3-1	•기점변경 중2-135 → 중1-141 사천동 106-10 → 사천동 112-2 •연장변경 L = 363m → 329m	•기점 도로 변경에 따른 연장 축소 및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시천1
소로 3-2	소로 3-2	•기점변경 소3-1 → 중1-141 •연장변경 L = 247m → 232m	•기점 도로 변경에 따른 연장 축소 및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시천1
소로 3-3	소로 3-3	•기점변경 중2-135 → 중1-141 사천동 63 → 사천동 94 •연장변경 L = 188m → 127m	•기점 도로 변경에 따른 연장 축소 및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시천1
소로 3-1	소로 3-1	•중점변경 중1-57 → 소2-180	•중점 도로변경에 따른 정정	다락방
소로 3-2	소로 3-2	•중점변경 석남동 산21-4 → 석남동 산21-7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다락방
소로 3-3	소로 3-3	•기점변경 석남동 322-2 → 석남동 322-56 •중점변경 석남동 322-2 → 석남동 322-56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다락방
소로 3-4	소로 3-4	•기점변경 석남동 329-1 → 석남동 329-18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기점 정정에 의한 변경	다락방
소로 3-5	소로 3-5	•중점변경 석남동 산17-2 → 석남동 산17-3	•지적분할에 따른 도로 중점 정정에 의한 변경	다락방

## 나) 주차장

○ 주차장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연수구 선학동 99-1일원	연수구 선학동 99-1일원	540	-	540	인고98호 (2006.6.5)	큰도장
기정	1	주차장	남동구 수산동 73 일원	남동구 수산동 73 일원	640	-	640	인고98호 (2006.6.5)	경신
기정	1	주차장	남동구 수산동 121-4 일원	남동구 수산동 121-4 일원	657	-	657	인고98호 (2006.6.5)	냉정
기정	1	주차장	남동구 수산동 492 일원	남동구 수산동 492 일원	500	-	500	인고98호 (2006.6.5)	남발촌
기정	1	주차장	남동구 도림동 산6 일원	남동구 도림동 산6 일원	500	-	500	인고98호 (2006.6.5)	도림1
폐지	1	주차장	남동구 장수동 59-1일원	-	500	감)500	-	인고98호 (2006.6.5)	만의골 (주차장 폐지)
기정	1	주차장	남동구 운연동 357-4 일원	남동구 운연동 357-4 일원	333	-	333	인고98호 (2006.6.5)	제척
변경	1	주차장	부평구 십정동 24-1 일원	부평구 십정동 24-10 일원	1,647	-	1,647	인고116호 (2006.7.18)	열우물 (위치 정정)
변경	1	주차장	계양구 이화동 274-2 일원	계양구 이화동 274-6 일원	399	-	399	인고116호 (2006.7.18)	이화 (위치 정정)
기정	2	주차장	계양구 이화동 43-1 일원	계양구 이화동 43-1 일원	445	-	445	인고116호 (2006.7.18)	이화
기정	3	주차장	계양구 이화동 226-4 일원	계양구 이화동 226-4 일원	570	-	570	인고116호 (2006.7.18)	이화
기정	1	주차장	계양구 선주지동 123-1 일원	계양구 선주지동 123-1 일원	538	-	538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변경	2	주차장	계양구 선주지동 114-1 일원	계양구 선주지동 114-1 일원	534	-	534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위치변경)
기정	1	주차장	계양구 다남동 103-88 일원	계양구 다남동 103-88 일원	565	-	565	인고98호 (2006.6.5)	다남123
기정	1	주차장	계양구 하야동 64-10 일원	계양구 하야동 64-10 일원	500	-	500	인고116호 (2006.7.18)	상야
변경	2	주차장	계양구 상야동 9-4 일원	계양구 상야동 9-6 일원	553	-	553	인고116호 (2006.7.18)	상야 (위치 정정)
기정	3	주차장	계양구 상야동 29-1 일원	계양구 상야동 29-1 일원	780	-	780	인고116호 (2006.7.18)	상야
기정	4	주차장	계양구 평동 54-3 일원	계양구 평동 54-3 일원	695	-	695	인고116호 (2006.7.18)	상야
신설	1	주차장	-	서구 석남동 322-75 일원	-	증) 222	222	-	다락방

○ 주차장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1	주차장	•주차장 폐지 •면적 : 500m <sup>2</sup>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주차장 폐지	만의골
1	주차장	•위치 정정 십정동 24-1 일원 → 십정동 24-10 일원	•지적분할에 따른 위치 정정에 의한 변경	열우물
1	주차장	•위치 정정 이화동 274-2 일원 → 이화동 274-6 일원	•지적분할에 따른 위치 정정에 의한 변경	이화
2	주차장	•위치 변경 (동일 토지내에서 위치 이동) •면적 변경없음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동일 토지내에서 주차장 위치 이동	선주지
2	주차장	•위치 정정 상아동 9-4 일원 → 상아동 9-6 일원	•지적분할에 따른 위치 정정에 의한 변경	상야
1	주차장	•주차장 신설 •위 치 : 서구 석남동 322-75 일원 •면 적 : 222m <sup>2</sup>	•기조성된 주차장 현실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다락방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소공원	-	연수구 선학동 33-1일원	-	증1,385	1,385	-	큰도장
신설	1	공원	소공원	-	연수구 선학동 127-4 일원	-	증 356	356	-	긴도장
변경	1	공원	어린이 공원	남동구 수산동 72-4 일원	남동구 수산동 72-8 일원	1,500	-	1,500	인고98호 (2006.6.5)	경신 (위치 정정)
신설	1	공원	소공원	-	남동구 수산동 535 일원	-	증 360	360	-	농골
기정	1	공원	어린이 공원	남동구 도림동 104 일원	남동구 도림동 104 일원	1,500	-	1,500	인고98호 (2006.6.5)	도림1
신설	1	공원	소공원	-	남동구 도림동 354-5 일원	-	증 264	264	-	주적
신설	1	공원	소공원	-	남동구 논현동 49 일원	-	증 180	180	-	몽녀

○ 공원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소공원	-	남동구 장수동 361-2 일원	-	증 452	452	-	수현
신설	1	공원	소공원	-	남동구 장수동 45-10 일원	-	증 517	517	-	만의골
신설	1	공원	소공원	-	남동구 운연동 49-1 일원	-	증 2,073	2,073	-	연락골
신설	1	공원	소공원	-	남동구 만수동 810-14 일원	-	증 510	510	-	산저
신설	1	공원	소공원	-	남동구 서창동 67 일원	-	증 573	573	-	걸재
신설	1	공원	소공원	-	남동구 운연동 343-3 일원	-	증 241	241	-	제척
신설	1	공원	소공원	-	부평구 산곡동 산44 일원	-	증 150	150	-	화랑
기정	1	공원	권역공원	부평구 삼정동 64-3 일원	부평구 삼정동 64-3 일원	13,965	-	13,965	인고16호 (2006.7.18)	열유물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부평구 삼정동 산90 일원	부평구 삼정동 산90 일원	1,600	-	1,600	인고16호 (2006.7.18)	열유물
신설	1	공원	소공원	-	계양구 독실동 116-4 일원	-	증 156	156	-	독실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계양구 이화동 산29-1 일원	계양구 이화동 산29-1 일원	1,500	-	1,500	인고16호 (2006.7.18)	이화
신설	1	공원	소공원	-	계양구 오류동 119-1 일원	-	증 354	354	-	오류
신설	1	공원	소공원	-	계양구 오류동 81-7 일원	-	증 176	176	-	갈현2
신설	1	공원	소공원	-	계양구 오류동 113-7 일원	-	증 380	380	-	갈현
신설	2	공원	소공원	-	계양구 오류동 113-12 일원	-	증 189	189	-	갈현

○ 공원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소공원	-	계양구 이화동 122-35 일원	-	증 826	826	-	선주지2
기정	1	공원	어린이 공원	계양구 선주지동 200 일원	계양구 선주지동 200 일원	2,000	-	2,000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신설	1	공원	소공원	-	계양구 목상동 101 일원	-	증 190	190	-	목상
신설	1	공원	소공원	-	계양구 다남동 68-2 일원	-	증 300	300	-	다남6
신설	1	공원	소공원	-	계양구 다남동 112-14 일원	-	증 329	329	-	다남123
신설	1	공원	소공원	-	계양구 다남동 101-7 일원	-	증 547	547	-	다남5
기정	1	공원	어린이 공원	계양구 하이동 64-49 일원	계양구 하이동 64-49 일원	1,500	-	1,500	인고16호 (2006.7.18)	상야
기정	2	공원	어린이 공원	계양구 상야동 12-2 일원	계양구 상야동 12-2 일원	1,500	-	1,500	인고16호 (2006.7.18)	상야
신설	3	공원	어린이 공원	-	계양구 상야동 526-5 일원	-	증 1,500	1,500	-	상야
신설	1	공원	소공원	-	계양구 하이동 64-29 일원	-	증 358	358	-	상야
신설	1	공원	소공원	-	계양구 방축동 54 일원	-	증 230	230	-	방축
신설	1	공원	소공원	-	계양구 박촌동 225-2 일원	-	증 320	320	-	송현
신설	1	공원	소공원	-	계양구 박촌동 287-36 일원	-	증 137	137	-	마미묘
신설	1	공원	소공원	-	계양구 이화동 23-19 일원	-	증 351	351	-	이화2
신설	1	공원	소공원	-	서구 검암동 454-7 일원	-	증 300	300	-	하동
신설	1	공원	소공원	-	서구 사천동 97-3 일원	-	증 336	336	-	사천1
신설	1	공원	소공원	-	서구 석남동 322-32 일원	-	증 1,358	1,358	-	대륙방

○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고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연수구 선학동 33-1 일원 •면 적 : 1,385㎡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큰도장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연수구 선학동 127-4 일원 •면 적 : 356㎡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간도장
1	공 원	•위치정정 수산동 72-4 일원 → 수산동 72-8 일원	•지적분할에 따른 위치 정정에 의한 변경	경신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남동구 수산동 535 일원 •면 적 : 360㎡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능골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남동구 도림동 354-5 일원 •면 적 : 264㎡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주적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남동구 논현동 49 일원 •면 적 : 180㎡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동녕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남동구 장수동 361-2 일원 •면 적 : 452㎡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수현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남동구 장수동 45-10 일원 •면 적 : 517㎡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만의골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남동구 운연동 49-1 일원 •면 적 : 2,073㎡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연락골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남동구 만수동 810-14 일원 •면 적 : 510㎡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산저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남동구 서창동 67 일원 •면 적 : 573㎡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걸재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남동구 운연동 343-3 일원 •면 적 : 241㎡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제척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부평구 산곡동 산44 일원 •면 적 : 150㎡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화랑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계양구 독실동 116-4 일원 •면 적 : 156㎡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독실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계양구 오류동 119-1 일원 •면 적 : 354㎡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오류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계양구 오류동 81-7 일원 •면 적 : 176㎡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갈현2

○ 공원 변경 사유서(계속)

도면표시 번호	공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고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계양구 갈현동 113-7 일원 •면 적 : 380㎡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갈현
2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계양구 갈현동 113-12 일원 •면 적 : 189㎡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갈현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계양구 이화동 122-35 일원 •면 적 : 826㎡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선주지2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계양구 목상동 101 일원 •면 적 : 190㎡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목상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계양구 다남동 68-2 일원 •면 적 : 300㎡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다남6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계양구 다남동 112-14 일원 •면 적 : 329㎡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다남23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계양구 다남동 101-7 일원 •면 적 : 547㎡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다남5
3	공 원	•어린이공원 신설 •위 치 : 계양구 상야동 526-5 일원 •면 적 : 1,500㎡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어린이 공원 신설	상야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계양구 하야동 64-29 일원 •면 적 : 358㎡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상야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계양구 방축동 54 일원 •면 적 : 230㎡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방축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계양구 박촌동 225-2 일원 •면 적 : 320㎡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승현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계양구 박촌동 287-36 일원 •면 적 : 137㎡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마미묘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계양구 이화동 23-19 일원 •면 적 : 351㎡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이화2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서구 검암동 454-7 일원 •면 적 : 300㎡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하동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서구 시천동 97-3 일원 •면 적 : 336㎡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시천1
1	공 원	•소공원 신설 •위 치 : 서구 석남동 322-32 일원 •면 적 : 1,358㎡	•주거지내 적정규모의 소공원 신설	다락방

## 나) 녹지

### ○ 녹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남동구 수산동 197-2 일원	남동구 수산동 197-6 일원	1,100	감) 458	642	인고98호 (2006.6.5)	냉정 (위치 정정 및 면적변경)
기정	2	녹지	완충 녹지	남동구 수산동 277-1 일원	남동구 수산동 277-1 일원	1,439	-	1,439	인고98호 (2006.6.5)	냉정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남동구 수산동 310-2 일원	남동구 수산동 310-2 일원	1,505	증) 493	1,998	인고98호 (2006.6.5)	남발촌 (면적 변경)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남동구 도림동 96-6 일원	남동구 도림동 96-12 일원	3,698	-	3,698	인고98호 (2006.6.5)	도림1 (위치 정정)
신설	1	녹지	경관 녹지	-	계양구 독실동 168 일원	-	증) 164	164	-	독실
변경	1	녹지	경관 녹지	계양구 선주지동 103-3 일원	계양구 선주지동 103-3 일원	2,216	감) 117	2,099	인고98호 (2006.6.5)	선주지 (면적 변경)

###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고
1	녹 지	•위치정정 수산동 197-2 일원 → 수산동 197-6 일원 •면적 변경 A = 1,100㎡ → 642㎡ (감 458㎡)	•대로 2-7호선 가감속차로에 의한 면적 감소 및 지적분할에 따른 위치 정정에 의한 변경	냉정
1	녹 지	•면적 변경 A = 1,505㎡ → 1,998㎡ (증 493㎡)	•남동구고시 제2012-27호 (2012.3.2)에 의해 소로 2-1호선의 선형변경으로 발생한 잔여지(고속도로 법면)를 완충 녹지로 변경	남발촌
1	녹 지	•위치정정 도림동 96-6 일원 → 도림동 96-12 일원	•지적분할에 따른 위치 정정에 의한 변경	도림1
1	녹 지	•경관녹지 신설 •위 치 : 계양구 독실동 168 일원 •면 적 : 164㎡	•도시경관 증진을 위해 경관 녹지 신설	독실
1	녹 지	•면적 변경 A = 2,216㎡ → 2,099㎡ (감 117㎡)	•소로 2-95호선 결정(2008.01.15) 및 소로 2-2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녹지 면적 변경	선주지

다) 광장

○ 광장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광장	경관 광장	남동구 장수동 63-6 일원	321	증 6,420	6,741	인고98호 (2006.6.5)	만의골 (공정확대)
기정	89	광장 (검암C)	교통 광장	서구 검암동 418-1 일원	286,090 (9,104)	-	286,090 (9,10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8호 (2010.07.08)	하동

주) ( )는 구역 내 광장의 면적에 관한 사항임

○ 광장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1	광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광장 확대 결정</li> <li>•면적 : 321㎡ → 6,741㎡ (증 6,4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수 주변 경관광장 확대에 따른 문화재 보호 및 효율적 도시관리 도모</li> </ul>	만의골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학교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상야 초교	초등 학교	계양구 상야동 130-1 일원	6,582	-	6,582	교육위 고시 제35호 (1989.09.21)	상야

## 나)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사회 복지 시설	서구 석남동 325 일원	서구 석남동 325 일원	4,240	-	4,240	서구 고시 제2006-53호 (2006.10.18)	다락방

## 4) 방재시설

### 가) 하천

○ 하천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중점	주요 경과지	연장 (m)	폭원 (m)	면적 (㎡)		
기정	1	하천	하천 (굴포천 본류)	부평구 갈산동	계양구 평동	-	9,840 (852)	43~98	635,480 (65,857)	건고제567호 (1992.10.24)	상야
기정	1	하천 (0차천)	국가 하천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한강 분점	인천시 서구 오류동 해안	-	18,700 (243)	-	157,140,000 (6,26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호 (2011.1.7)	시천1

주) ( )는 구역 내 하천의 연장 및 면적에 관한 사항임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별도의 가구계획은 하지 않으며, 가구의 장변이 150m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고 획지계획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배제
- 대지 분할·합병시 적정대지규모를 330㎡로 권장하고 200㎡ 미만으로의 분할을 금지

구 분	면 적 기 준		비 고	
	기 정	변 경		
큰도장·간도장·경신·냉정·남발촌·능골·도림·주적·동넙·수현·만의골·연락골·산자·걸재·제척·화랑·독실·오류·갈현2·갈현·선주지2·선주지·목상·다남6·다남123·다남5·방축·송현·마가묘·이화2·하동·시천1·다락방지구	최소대지규모	-	90㎡	규제
	최소대지분할규모	-	200㎡	규제
	적정대지규모	-	330㎡	권장
열우물·이화·상야지구	최소대지규모	150㎡	150㎡	규제
	최소대지분할규모	-	200㎡	규제
	적정대지규모	330㎡	330㎡	권장

- 주) 1.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지분할은 제외함  
 2. 최소대지분할규모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사도개설 포함) 설치, 대지 교환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큰도장·간도장·경신·냉정·남발촌·능골·도림1·주적·동넙·수현·만의골·연락골·산자·걸재·제척·화랑·열우물·독실·이화·오류·갈현2·갈현·선주지2·선주지·목상·다남6·다남123·다남5·상야·송현·마가묘·이화2·하동·시천1·다락방지구	용 도	•별표1 참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15m) 이하
		배 치	•별표2 참조
		형 태	•별표2 참조
		색 채	•별표2 참조
		건축선	•별표2 참조

○ 자연녹지지역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방축지구	용 도	•별표1 참조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4층(15m) 이하
		배 치	•별표2 참조
		형 태	•별표2 참조
		색 채	•별표2 참조
		건축선	•별표2 참조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큰도장·간도장·경신·냉정· 남발촌·능골·도림1·주적· 동녘·수현·만의골·연락골· 산저·걸재·제척·화랑·열우물· 독실·이화·오류·갈현2·갈현· 선주지2·선주지·목상·다남6· 다남123·다남5·상야·방축· 송현·마가묘·이화2·하동· 시천1·다락방지구	대지내공지	•별표3 참조
		교통처리	•별표3 참조
		옥외광고물	•별표3 참조
		경 관	•별표3 참조

라. 기타 (군사시설보호구역, 시지정문화재 영향검토구역)

- 상기 구역에 해당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 인·허가시 관계기관 (부서)과 협의를 하여야함

[별표1] 건축물 용도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허용도를 제외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허용용도</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이화·상야지구)</li> </ul>
변경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동당 6세대 이하)</li> <li>•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 (단,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제외)</li> <li>• 제1종근린생활시설</li> <li>•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li> <li>•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li> <li>•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직업훈련소, 장의사, 총포사, 안마 시술소, 단란주점, 지상·지하노래연습장 제외)</li> <li>•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단, 폭 12m 이상인 도로에 12m 이상 접하는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단, 대로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함)</li> <li>•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지하층, 지붕층(다락, 옥탑) 주거용도</li> <li>• 고물상, 야적장, 폐자원수집소 등 주거환경 위해용도</li> </ul>

주) 기정은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임(열우물·이화·상야지구)

## [별표2]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배치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가급적 일치시켜야 한다.</li> <li>•2개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의 전면이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한다.</li> </ul>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가급적 일치시켜야 한다.</li> <li>•2개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의 전면이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한다.</li> <li>•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에 벽면이 따르도록 권장한다.</li> </ul>
형태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지붕은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물탱크의 외부노출은 불허</li> <li>•경사지붕의 경사는 3/10~7/10이 되어야 함(단, 경사지붕 부분은 높이산정에서 제외)</li> </ul>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은 모든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li> <li>•건축물(주택)의 지붕은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물탱크의 외부노출은 불허</li> <li>•경사지붕 설치기준(경사지붕 부분은 높이산정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 구배 3/10~7/10의 경사지붕 설치</li> <li>- 공동주택 : 용마루를 갖춘 물매 1:3 이하의 경사지붕 설치</li> <li>- 기타(점포주택 포함) : 구배 3/10~7/10의 경사지붕 설치 (슬라브지붕 설치시 옥상녹화 30% 이상)</li> <li>- 꺾임지붕 및 맨사드지붕 불허</li> </ul> </li> <li>•가로공간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담장미설치를 권장하며, 설치시에는 1.0m 이하의 식재형담장(생울타리) 또는 투시형담장으로 설치하되 가능한 식재형담장을 권장</li> <li>•옹벽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며, 설치시는 콘크리트 옹벽을 지양하고 자연석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공법 사용</li> <li>•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 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단, 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본 건축물의 준공전까지 허용함)</li> </ul>
색채	기정	-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외벽색채는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 및 색조를 사용</li> <li>•수목, 토양 등 자연색 배경을 고려하여 YR계열 권장</li> <li>•권장색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조 : 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6~9 / 채도 3 이하</li> <li>- 보조 : 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3~8 / 채도 4 이하</li> <li>- 보조 : 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3~7 / 채도 4 이하</li> </ul> </li> </ul>
건축선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m~12(13)m 도로변 건축한계선 1m (열우물지구)</li> <li>•소2-1, 소3-1, 소3-3, 소3-14호선 도로변 건축한계선 1m (이화지구)</li> <li>•8m~10m 도로변 건축한계선 1m (상야지구)</li> </ul>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지정내용 변경없음)(열우물·이화·상야지구)</li> <li>•건축한계선(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큰도장지구 외 32개지구)</li> </ul>

주) 기정은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임(열우물·이화·상야지구)

[별표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공지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후퇴 사이의 공지는 전면공지로 조성</li> <li>•전면공지 조성시 인접보도나 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조성</li> <li>•법정 대지내 조경면적 및 공개공지 조성면적은 가로변 보행공간의 확보 및 휴게공간 조성 유도</li> </ul>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지경계선과 건축선 후퇴 사이의 공지는 전면공지로 조성</li> <li>•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단,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는 예외)</li> <li>•전면공지 조성시 인접보도나 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조성</li> <li>•법정 대지내 조경 및 공개공지 조성면적을 씌지공원 형태로 조성토록 하여 가로변 보행공간의 확보 및 휴게공간 조성을 유도</li> </ul>
교통처리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 8m 이상도로에 접하는 주요교차로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치 (상야지구)</li> <li>•지구내 어린이공원 인근 교차로 1개소와 소2-1호선의 교차각각부에 10m 이내 차량출입 불허 (이화지구)</li> <li>•8m 이상 도로와 접하는 주요교차 각각부에 10m 이내 차량출입금지 구간 설치 (열우물지구)</li> </ul>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차량출입구 설치 및 차량출입을 할 수 없음</li> </ul>
옥외광고물	기정	-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외광고물은 점포당 2개 이내로 제한하며, 입체형간판의 설치를 권장</li> <li>•가로형간판의 사이즈는 전면 점포 가로폭의 80% 이내로 제한하고 돌출간판은 돌출폭을 건물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로 제한</li> <li>•광고물의 유형은 세로형간판, 옥상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네온사인, 점멸 등의 사용을 금지</li> </ul>
경관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진입도로의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정연한 가로경관조성 및 주요시설의 조망권 확보</li> <li>•전면공지에 의해 확보된 보행공간의 포장패턴을 동일하여 일체 연속적인 가로경관 확보</li> </ul>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진입도로의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정연한 가로경관조성 및 주요시설의 조망권 확보</li> <li>•전면공지에 의해 확보된 보행공간의 포장패턴은 전면도로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일체적이고 연속적인 가로경관을 확보</li> </ul>

주) 기정은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임(열우물·이화·상야지구)



## 1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기 정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16호(2006.7.18)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된 지구(일우물·이화·상야)에 기 수립된 사항임
- 변 경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98호(2006.6.5)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단위계획 미수립)된 지구(큰도장지구 외 32개지구)에 신규수립 및 기 수립된 지구(일우물·이화·상야)에 변경 수립되는 사항임

### 1. 민간부문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p> <p>① 본 민간부문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등의 우선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침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② 민간부문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건축물의 대지·용도·형태 및 공간활용 등에 관한 부문을 말한다.</p> <p>제2조 (지침 적용의 기본원칙)</p> <p>①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나 관련조례에 따른다.</p>	<p>제1조 (목적)</p> <p>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집단취락) 내 지구단위계획” (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조 (지침 적용의 기본원칙)</p> <p>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별된다. 이 중 '규제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권장에 따를 것을 권하여 장려하는 경우로서 <u>지구단위계획 담당자</u>에게 조정권한을 부여한 사항이다.</p>	<p>②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별된다. 이 중 '규제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권장에 따를 것을 권하여 장려하는 경우로서 <u>허가권자</u>에게 조정권한을 부여한 사항이다.</p>
<p>③ 지침의 내용이 관련법규나 관련조례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법규의 범위안에서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대지 상호간의 합병 또는 공동개발 등에 의해 서로 상이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폭원이 더 넓은 도로에 면한 필지의 지침에 따른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본 <u>지침</u>과 <u>시행지침도</u>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는 시행지침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p>	<p>⑤ 본 <u>시행지침</u>과 <u>지구단위계획결정도</u> 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는 <u>도면</u>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p>
<p>⑥ 민간부문 시행지침은 민간시행자가 공공부문 시행지침은 공공이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단, 민간부문사업 시행중 공공부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지침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개정·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따른다.</p>	<p>⑦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용어의 정의)</p> <p>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p> <p>2. “공동개발” 이라 함은 20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p> <p>3. “<u>대지분할가능선</u>” 이라 함은 <u>개발촉진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필지나 부정형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분할 가능위치를 권장하는 선을 말한다.</u></p> <p>4. “최고층수” 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p> <p>5. “허용용도” 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건축 가능한 용도 중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허용하는 용도를 말한다.</p> <p>6. “건폐율” 이라 함은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p> <p>7. “용적률” 이라 함은 건축법 제48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p>	<p>제3조 (용어의 정의)</p> <p>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삭제)</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8. “건축한계선” 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8. (현행과 같음)</p>
<p>9. “전면공지” 라 함은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의 대지안의 공지로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p>	<p>9. (현행과 같음)</p>
<p>10. “차량출입불허구간” 이라 함은 도로에서 대지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p>	<p>10. (현행과 같음)</p>
<p>11. “주차출입구” 라 함은 필지로의 차량출입을 지정한 입구를 말한다.</p>	<p>11. (삭제)</p>
<p>(신설)</p>	<p>12. “보행자전용도로” 라 함은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해 설치되는 도로를 말한다.</p>
<p>(신설)</p>	<p>13. “다락” 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 속의 공간을 가로막아 설치한 공간을 말하며, 면적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기준을 따른다.</p>
<p>(신설)</p>	<p>14. “옥탑” 이라 함은 건축물 옥상부분에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면적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기준을 따른다.</p>
<p>(신설)</p>	<p>15. “불허용도” 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건축가능한 용도 중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불허하는 용도를 말한다.</p>
<p>② 본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서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단위대지 : 권장사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는 기존의 필지</li> <li>2. 공동개발에 의해 묶여진 일단의 필지</li> <li>3. 대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된 각각의 필지</li> </ol> <p>제 5 조 (대지의 최소개발규모 : 규제사항)</p> <p>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지침도상 제시되지 않은 필지분할시 최소규모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단, 기존 필지 규모가 최소개발규모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 개별사업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을 관계법에 의거 결정·승인을 득한 경우는 당해 결정·승인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대지의 최소개발규모(규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면 적 기 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최소개발규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면 적 기 준	비 고	최소개발규모	150㎡		<p>제4조 (단위대지 : 권장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기존의 필지</li> <li>2. 공동개발에 의해 묶여진 일단의 필지</li> <li>3. (삭제)</li> </ol> <p>제 5 조 (최소대지규모 및 최소대지분할 규모 : 규제사항)</p> <p>① 개발 가능한 최소대지규모 및 필지분할시 최소대지분할규모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최소대지규모 및 최소대지분할규모(규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면적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최소 대지규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90㎡</td> <td>큰도장간도장경산냉장남발총농공도림·주착·동낙·수현·만의골·연락골·산자·걸재·제척·화랑·독살·오류갈현2·갈현·선주지2·선주자·목상·다남·6·다남·123·다남·5·방축·송현·마가묘·이화2·하동·시전1·다량·방지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0㎡</td> <td style="text-align: center;">열우물·이화상·야지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최소대지 분할규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집단취락 36개지구</td> </tr> </tbody> </table> <p>주) 1. '공유도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지분할은 제외함 2. 최소대지분할규모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사·도·개·설 포함) 설치·대지교환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최소대지 : 건축물용도 중 허용용도의 건축물대지를 말함</p> <p>제6조 (적정대지규모 : 권장사항)</p> <p>대지를 기준으로 단위개발시 (삭제) 인접필지와 공동개발 및 분할·합병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개발할 것을 권장한다.</p>	구 분	면적기준	비 고	최소 대지규모	90㎡	큰도장간도장경산냉장남발총농공도림·주착·동낙·수현·만의골·연락골·산자·걸재·제척·화랑·독살·오류갈현2·갈현·선주지2·선주자·목상·다남·6·다남·123·다남·5·방축·송현·마가묘·이화2·하동·시전1·다량·방지구	150㎡	열우물·이화상·야지구	최소대지 분할규모	200㎡	집단취락 36개지구
구 분	면 적 기 준	비 고																
최소개발규모	150㎡																	
구 분	면적기준	비 고																
최소 대지규모	90㎡	큰도장간도장경산냉장남발총농공도림·주착·동낙·수현·만의골·연락골·산자·걸재·제척·화랑·독살·오류갈현2·갈현·선주지2·선주자·목상·다남·6·다남·123·다남·5·방축·송현·마가묘·이화2·하동·시전1·다량·방지구																
	150㎡	열우물·이화상·야지구																
최소대지 분할규모	200㎡	집단취락 36개지구																
<p>제6조 (기준대지규모 및 대지의 최대개발 규모 : 권장사항)</p> <p>① 대지를 기준으로 단위개발시 단독주택의 경우 인접필지와 공동개발 및 분할·합병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개발할 것을 권장한다.</p>	<p>제6조 (적정대지규모 : 권장사항)</p> <p>대지를 기준으로 단위개발시 (삭제) 인접필지와 공동개발 및 분할·합병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개발할 것을 권장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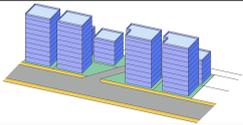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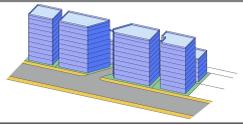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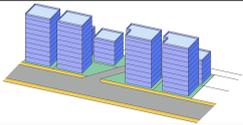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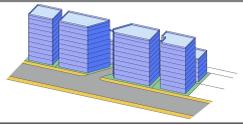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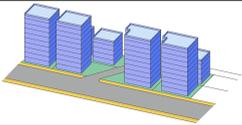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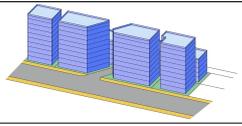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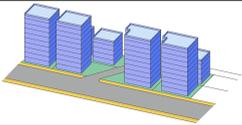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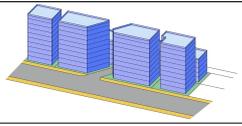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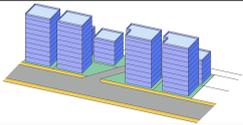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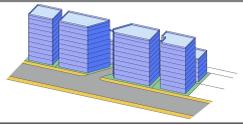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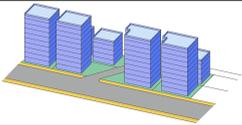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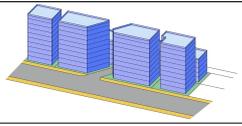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대지의 기준대지규모(권장)			적정대지규모(권장)		
구 분	기준대지규모(권장)	비 고	구 분	면적기준	비 고
단독주택	330㎡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토지분할기준 적용	적정대지규모	330㎡	(삭제)
<p>제7조 (공동개발 : 권장사항)</p> <p>① 공동개발(권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권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구단위계획 작성자가 공동개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제7조 ①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중 <u>인접필지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u></p> <p>2. 기형적 건축이 예상되는 부정형 필지, 세장비가 큰 필지 또는 삼각형 필지로 필지 여건상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u>부정형 필지</u></p> <p>3. 필지의 면적이 그 입지 위치에 따른 개발잠재력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할 경우</p> <p>②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필지라도 해당 필지의 소유자가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u>본 지침 제6조의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공동개발하도록 권장한다.</u></p> <p>제8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 : 권장사항)</p> <p>①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u>과대필지 내지는 부정형 필지, 도로의 폐쇄에 대한 분할 및 합병을 권장한다.</u></p>			<p>제7조 (공동개발 : 권장사항)</p> <p>① 공동개발(권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권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u>허가권자가</u> 공동개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여러 필지에 <u>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u></p> <p>2. <u>건축이 불가능한 맹지,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잔여지</u>, 기형적 건축이 예상되는 부정형 필지, 세장비가 큰 필지 또는 삼각형 필지 등 필지 여건상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u>(삭제) 필지</u></p> <p>3. 필지의 면적이 그 입지 위치에 따른 개발잠재력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u>최소대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u></p> <p>②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필지라도 해당 필지의 소유자가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u>(삭제) 공동개발하도록 권장한다.</u></p> <p>제8조 (삭제)</p>		

현 행	개 정 (안)
<p>② 필지의 분할은 '대지분할가능선'을 따라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지분할가능선'의 이동을 허용한다.</p> <p>③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의 분할 및 합병이 권장되어 있지 않은 필지라도 토지소유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 지침 제5조~제6조의 기준 범위내에서 필지의 분할 및 합병이 가능하다. 단 필지의 분할 및 합병시 모든 필지에 차량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8조의1 (대지교환 : 권장사항)</p> <p>① 부정형 필지의 정형화 유도를 위한 인접 필지 간 토지교환시 교환면적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p> <p>② 대지와 타 지목간 토지교환시 1:1 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대지로의 전환에 따른 제반 비용(전용부담금, 설계비 등)은 타 지목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b>제8조의2 (허용용도 : 규제사항)</b>  <b>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에 열거한 건축물 용도에 한하여 허용한다.</b></p> <p style="text-align: center;"><b>건축물 용도계획(규제)</b></p> <table border="1" data-bbox="801 725 1428 1249"> <thead> <tr> <th data-bbox="801 725 877 763">구 분</th> <th data-bbox="877 725 1428 763">용도계획(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01 763 877 1137">허용용도</td> <td data-bbox="877 763 1428 1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동당 6세대 이하)</li> <li>•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 (단,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제외)</li> <li>•제1종근린생활시설</li> <li>•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li> <li>•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li> <li>•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직업훈련소, 장의사, 총포사, 안바시술소, 단란주점, 지상지하노래연습장 제외)</li> <li>•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단, 폭 12m 이상인 도로에 12m 이상 접하는 경우에 한함)</li> <li>•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단, 대로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함)</li> <li>•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li> </ul> </td> </tr> <tr> <td data-bbox="801 1137 877 1249">불허용도</td> <td data-bbox="877 1137 1428 1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지하층, 지붕층(다락, 옥탑) 주거용도</li> <li>•고물상, 야적장, 폐자원수집소 등 주거환경 위해용도</li> </ul> </td> </tr> </tbody> </table> <p>※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함</p>	구 분	용도계획(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동당 6세대 이하)</li> <li>•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 (단,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제외)</li> <li>•제1종근린생활시설</li> <li>•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li> <li>•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li> <li>•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직업훈련소, 장의사, 총포사, 안바시술소, 단란주점, 지상지하노래연습장 제외)</li> <li>•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단, 폭 12m 이상인 도로에 12m 이상 접하는 경우에 한함)</li> <li>•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단, 대로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함)</li> <li>•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지하층, 지붕층(다락, 옥탑) 주거용도</li> <li>•고물상, 야적장, 폐자원수집소 등 주거환경 위해용도</li> </ul>
구 분	용도계획(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동당 6세대 이하)</li> <li>•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 (단,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제외)</li> <li>•제1종근린생활시설</li> <li>•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li> <li>•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li> <li>•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직업훈련소, 장의사, 총포사, 안바시술소, 단란주점, 지상지하노래연습장 제외)</li> <li>•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단, 폭 12m 이상인 도로에 12m 이상 접하는 경우에 한함)</li> <li>•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단, 대로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함)</li> <li>•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지하층, 지붕층(다락, 옥탑) 주거용도</li> <li>•고물상, 야적장, 폐자원수집소 등 주거환경 위해용도</li> </ul>						
<p><b>제9조 (높이제한의 적용 : 규제사항)</b></p> <p>① 모든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u>조서 및 지침도상 표기가 있는 층수 및 고도제한</u>을 적용한다.</p> <p>② <u>최고층수 및 고도제한이 지정된 대지내</u>에서는 건축물을 지정된 층수 및 고도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p> <p>③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법 제51조 3항에 의한 사선제한(H = 1.5D)을 적용하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고높이(층수)를 초과할 수 없다.</p>	<p><b>제9조 (높이 : 규제사항)</b></p> <p>① 모든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u>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고층수 이하</u>로 적용한다.</p> <p>② <b>(삭제)</b></p> <p>③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법 제60조 3항에 의한 사선제한(H = 1.5D)을 적용하되,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고높이(층수 : <b>필로티 포함</b>)를 초과할 수 없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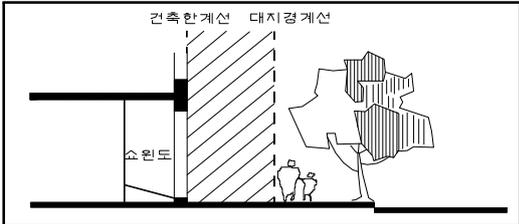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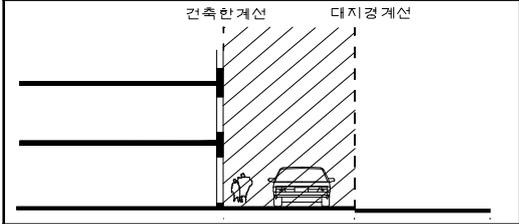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p>④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고도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적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토록 한다. 단,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상이한 높이규제를 받는 둘 이상의 대지를 합병하여 건축할 경우의 높이규제는 합병된 토지 중 강화된 높이규정을 적용한다.</p> <p>⑥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15m로 제한하며, 경사지붕의 형태는 제16조(지붕의 형태)에 따른다.</p> <p>⑦ 도면표시</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높 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4층(15m) 이하</td> </tr> </table>	높 이	4층(15m) 이하		
높 이	4층(15m) 이하				
<p>제10조 (건폐율 : 규제사항)</p> <p>①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건폐율의 범위안에서 정한 건폐율을 따른다.</p> <p>(신설)</p>	<p>제10조 (건폐율 : 규제사항)</p> <p>①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삭제)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u>규정을 따르되,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u></p> <p>② 도면표시</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건폐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60%/20% 이하</td> </tr> </table>	건폐율	60%/20% 이하		
건폐율	60%/20% 이하				
<p>제11조 (용적률 : 규제사항)</p> <p>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는 대지 별로 적용한 용적률 범위내에서 건축하여야 한다.</p> <p>② 도면표시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용적률</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r> </table>	용적률	200%	<p>제11조 (용적률 : 규제사항)</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도면표시</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용적률</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80% 이하</td> </tr> </table>	용적률	200%/80% 이하
용적률	200%				
용적률	200%/80% 이하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 (건축한계선의 적용 : 규제사항)</p> <p>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물 벽면이 돌출되어서는 <u>아니 되는</u> 선을 말한다.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와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p> <p>④ 현황도로에 적용되는 건축한계선은 현황 도로의 중심선 및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양측으로 동일하게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황도로 및 대지의 지적경계선이 과도하게 불규칙하여 통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지침도상 계획되어진 건축한계선의 선형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축한계선의 폭원을 적용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2조 (건축한계선의 적용 : 규제사항)</p> <p>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물 벽면이 돌출되어서는 <u>아니 된다</u>. 다만, 지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삭제)</p> <p>③(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p>⑤ 도면표시</p> <p>건축한계선  ※식별요령 : 적색 점선으로 표기</p>

현행	개정(안)								
<p>제13조 (건물의 방향성 : 규제, 권장사항)</p> <p>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 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을 가급적 일치시켜야 한다.</p> <p>② 2개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의 전면이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한다.</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건물의 방향성 제시</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px;">×</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		○		<p>제13조 (건축물의 방향성 : 권장사항)</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에 벽면이 따르도록 권장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의 방향성 제시(권장)</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px;">×</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		○	
×									
○									
×									
○									
<p>제14조 (건축물의 외관 : 권장사항)</p> <p>① 외벽면의 통일성</p> <p>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모든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측면 이격공지의 처리</p> <p>폭 25m이상의 가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 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담장, 문 등으로 차폐하여야 한다. 이때 담장, 문, 지하층 출입구 등은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p>	<p>제14조 (건축물의 외관 : 권장사항)</p> <p>① 외벽면의 통일성</p> <p>(삭제) 건축물은 모든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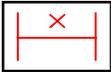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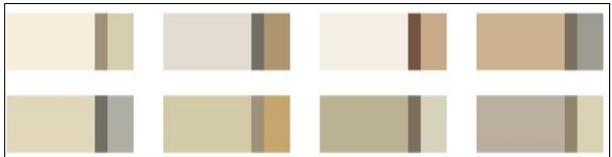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p>③ 개구부 없는 외벽면의 처리            폭 25m이상의 가로 및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1 (지붕의 형태 : 규제사항)</p> <p>① 건축물(주택)의 지붕은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물탱크의 외부노출은 불허한다.</p> <p>② 경사지붕의 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경사지붕 설치기준(규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설 치 기 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독주택</td> <td>•구배 3/10~7/10의 경사지붕 설치</td> <td style="text-align: center;">규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td> <td>•옹마루를 갖춘 물매 1:3 이하의 경사지붕 설치</td> <td style="text-align: center;">규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 타 건축물 (점포주택 포함)</td> <td>•구배 3/10~7/10의 경사지붕 설치 (슬라브지붕 설치시 옥상녹화 3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규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사항</td> <td>•꺾임지붕 및 맨사드지붕 불허</td> <td style="text-align: center;">규제</td> </tr> </tbody> </table>	구 분	설 치 기 준	비고	단독주택	•구배 3/10~7/10의 경사지붕 설치	규제	공동주택	•옹마루를 갖춘 물매 1:3 이하의 경사지붕 설치	규제	기 타 건축물 (점포주택 포함)	•구배 3/10~7/10의 경사지붕 설치 (슬라브지붕 설치시 옥상녹화 30% 이상)	규제	기타사항	•꺾임지붕 및 맨사드지붕 불허	규제
구 분	설 치 기 준	비고														
단독주택	•구배 3/10~7/10의 경사지붕 설치	규제														
공동주택	•옹마루를 갖춘 물매 1:3 이하의 경사지붕 설치	규제														
기 타 건축물 (점포주택 포함)	•구배 3/10~7/10의 경사지붕 설치 (슬라브지붕 설치시 옥상녹화 30% 이상)	규제														
기타사항	•꺾임지붕 및 맨사드지붕 불허	규제														
<p>제15조 (전면공지의 조성방식 : 규제사항)</p> <p>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도 및 차도와 접하는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길이 이상을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대지내 공지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지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의 공지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볼라드,</p>	<p>제15조 (전면공지의 조성방식 : 규제사항)</p> <p>① (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u>전면공지(보도부속형)</u>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u>전면공지</u>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u>그리고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u></p> <p>④ <u>전면공지(차도부속형)</u>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u>전면공지</u>는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와 전면도로의 포장 및 조성방법에 따라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신축시 <u>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u></p> <p>⑤ <u>기타사항</u>                      1. 단처리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대지내 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차이가 없어야 한다.                      2. 포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u>보도패턴</u>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고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통행방해물을 설치할 수 없다.</p>	<p>③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u>전면공지(보도부속형)</u>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u>또한,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토지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이를 시행한다.</u></p> <p>④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u>전면공지(차도부속형)</u>는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와 전면도로의 포장 및 조성방법에 따라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신축시 <u>개발주체(토지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이를 시행한다.</u></p> <p>⑤ <u>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은 지침에 의한다.</u>                      1. (현행과 같음)                      2. 포장 : 포장패턴 조성시 공공부문의 <u>포장패턴(보도 또는 차도)</u>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고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통행방해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u>차도포장시 「도로 포장 구조 설계」, 보도포장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3. 보도와 전면공지(인도부속형) 경계부 처리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공지와 보도와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볼라드, 돌의자 등을 설치한다. 단,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설치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p> <p>4. 적용의 예외 : 지구단위계획상 보도의 확장 외의 목적으로 지정된 대지내 공지는 위의 단처리와 포장에 대한 지침을 따르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며,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처리도 예외로 한다.</p> <p>제16조 (공개공지) : 규제사항</p> <p>①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면적, 설치방식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제6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규정을 따른다.</p> <p>② 대지내의 지정된 공개공지는 민간부문에서 확보하여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공개공지의 면적은 최소 45㎡ 이상, 최소폭은 5m 이상을 공개공지로 조성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하여야 한다.</p>	<p>3. (삭제)</p> <p>4. (현행과 같음)</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보도부속형 전면공지</b></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b>차도부속형 전면공지</b></p>  </div> <p>제16조 (공개공지 : 규제사항)</p> <p>①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면적, 설치방식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의 규정을 따른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공개공지의 면적은 최소 45㎡ 이상, 최소폭은 5m 이상을 공개공지로 <b>쌈지공원 형태로</b> 조성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④ 진입구의 설치</p> <p>1. 전면가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p> <p>2. 공개공지의 바닥은 접한 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④ 진입구의 설치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의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⑤ 공간활용</p> <p>1. 식수면적이 공개공지 면적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비포장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p> <p>2. 전체면적의 40% 이상이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p> <p>3. 포장부분의 조성방식은 공공부문을 준용한다.</p>	<p>⑤ 공간활용은 다음과 같은 지침에 의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⑥ 시설물의 설치</p> <p>1. 공개공지에는 벤치, 음수전 등 휴게시설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야간조명, 공개공지에 대한 안내판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2. 공개공지에는 시설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석재, 스테인레스강판,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 공개공지 표시판을 설치하고, 표시판에는 건축주, 공개공지의 위치, 관리책임자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p>	<p>⑥ 시설물의 설치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의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⑦ 식재</p> <p>1. 식수면적에 대한 식재기준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를 준용한다.</p> <p>2. 공개공지내 조경식재시 수목보호대겸 벤치나 수목식수대겸 벤치 등을 설치한다.</p>	<p>⑦ 식재는 다음과 같은 지침에 의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권장사항)</p> <p>① 대지내 통로는 장식포장을 권장한다.</p> <p>② 대지내 공지에는 환경장식물과 야간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p>	<p>제17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권장사항)</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 조 (담장 및 옹벽의 처리 : 권장사항)</p> <p>①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가능한한 식재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한다.</p> <p>② 담장 설치시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로 권장한다.</p> <p>③ (신설)</p>	<p>제18조 (담장 및 옹벽처리 : 권장사항)</p> <p>① 도로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담장의 미설치를 권장한다.</p> <p>② 담장을 설치할 경우 1.0m 이하의 식재형 담장(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되 가능한 한 식재형 담장을 권장한다.</p> <p>③ 옹벽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며, 설치시 콘크리트 옹벽을 지양하고, 자연석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공법사용을 권장한다.</p>
<p>제19조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적용 : 규제사항)</p> <p>① 폭 8m 이상 도로 교차로 및 통행이 빈번한 도로의 교차로 주변 10m에 차량출입 금지구간이 설정된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금한다.</p> <p>② 폭 35m 이상 도로에서 필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 지형조건 등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작성자가 판단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필지의 분할 및 지형조건등 대지여건상 부득이하게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 차량의 출입이 허용되어야 할 경우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19조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적용 : 규제사항)</p> <p>①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차량출입구 설치 및 차량출입을 할 수 없다.</p> <p>② 폭 35m 이상 도로에서 필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 지형조건 등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필지의 분할 및 지형조건등 대지여건상 부득이하게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 차량의 출입이 허용되어야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④ 도면표시</p> <p>차량출입 불허구간  ※ 식별요령 : 빨간색으로 표기</p> <p>(신설)</p>	<p>④ 도면표시</p> <p>차량출입  ※ 식별요령 : 빨간색으로 표기</p> <p>불허구간</p> <p>제20조 (주차출입구의 설치 : 규제사항)</p> <p>①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주차출입구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p> <p>②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서 차량의 대지내 진입동선과 진출동선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주차출입구를 최대 2개소까지 허용할 수 있다.</p> <p>제21조 (건축물의 색채 : 권장사항)</p> <p>① 건축물의 외벽색채는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 및 색조를 사용한다.</p> <p>② 수목, 토양 등 자연색 배경을 고려하여 YR계열을 권장한다.</p> <p>③ 권장색 범위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 계획 2010」, 자연경관 색채 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조 : N, R, YR, Y, GY, G, BG, B, PB, P, RP 명도 6~9, 채도 3 이하</li> <li>- 보조 : N, R, YR, Y, GY, G, BG, B, PB, P, RP 명도 3~8, 채도 4 이하</li> <li>- 보조 : N, R, YR, Y, GY, G, BG, B, PB, P, RP 명도 3~7, 채도 4 이하</li> </ul>  <p>제22조 (옥외광고물 : 규제사항)</p> <p>① 옥외광고물은 점포당 2개 이내로 제한하며, 입체형간판의 설치를 권장한다.</p> <p>② 가로형간판의 사이즈는 전면 점포 가로폭의 80% 이내로 제한하고 돌출간판은 돌출폭을 건물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로 제한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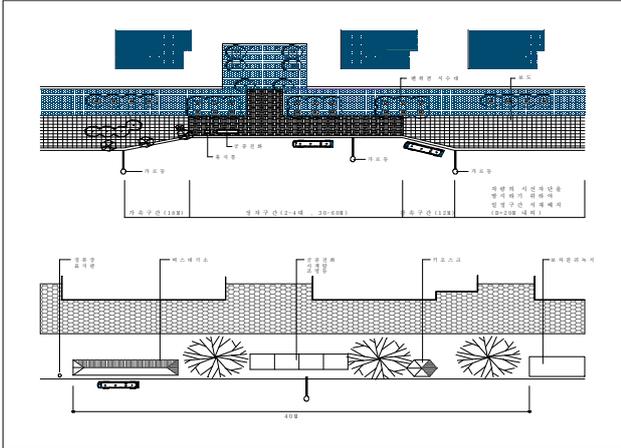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신설)	<p>③ 광고물의 유형은 세로형간판, 옥상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네온사인, 점멸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p> <p>④ 그 외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2010」,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2010」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p> <p>제23조 (신재생에너지 : 권장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의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등 에너지 재활용 설비를 설치토록 권장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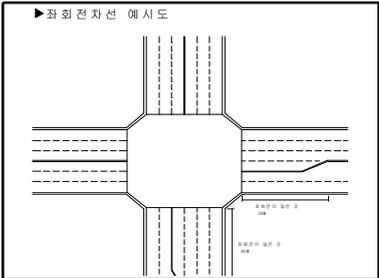
## 2. 공공부문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p> <p>① 본 공공부문 시행지침(이하 “<u>시행지침</u>”이라 한다.)은 “<u>지구단위계획</u>”을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u>시행지침도</u>에 표시되지 아니한 <u>시행지침</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② 공공부문이라 함은 도로시설물, 공원 및 녹지, 옥외가로시설물, 포장, 조명, 도시안내체계 등 공공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간이나 시설로서 공중의 이용에 개방되는 부분을 말한다.</p>	<p>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p> <p>① 본 <u>지구단위계획</u> 시행지침(이하 “<u>시행지침</u>”이라 한다.)은 “<u>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집단취락) 내 지구단위계획</u>”(이하 “<u>지구단위계획</u>”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u>지구단위계획결정도</u>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u>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p> <p>①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나 조례, 편람, 지침 등에 따른다.</p> <p>② 시행지침의 일부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 법규의 허용 범위에서 동 시행지침의 내용을 따른다.</p> <p>③ 단, 시행지침상 규정된 사항이라도 향후 관련법규의 개정 등에 따라 동지침을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통성있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제2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단, 시행지침 상 규정된 사항이라도 향후 관련법규의 개정 등에 따라 동지침을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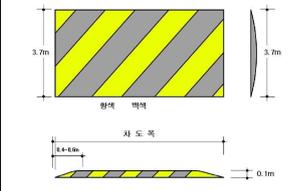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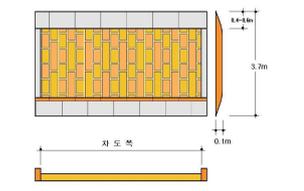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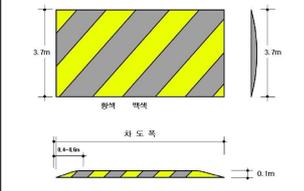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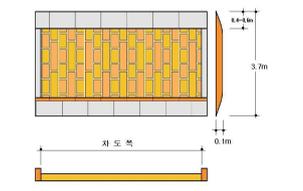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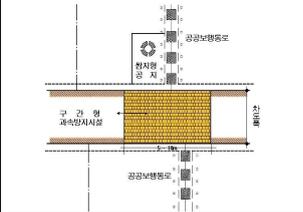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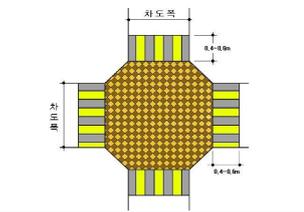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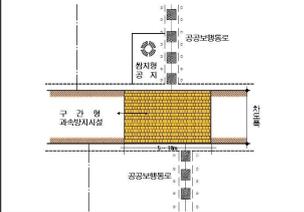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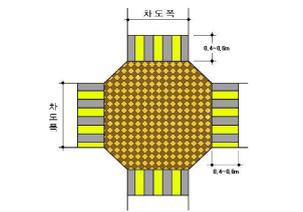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용어의 정의) (신설)</p> <p>1.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로서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해 설치되는 도로를 말한다.</p> <p>2. “일체조성”이라 함은 연결되고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함에 있어 가급적 단일 주체가 중심이 되어 유기적인 기능연계와 통합적으로 고려된 경관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4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도시계획시설중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해설 및 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법규에 따른다.</p> <p>제5조 (설계기준) ① 동선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세가로 접속체계를 정비하고 간선가로에 접속되는 세가로일정간격 이상을 유지하게 하며 접속되는 간선가로에 따른 세가로별로 차량출입은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p>	<p>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시행지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민간부문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의 내용을 따른다.</p> <p>1. (삭제)</p> <p>2. (현행과 같음)</p> <p>제4조 (적용범위) (현행과 같음)</p> <p>제5조 (설계기준) ① 동선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세가로 접속체계를 정비하고 <u>필요한 경우</u> 간선가로에 접속되는 <u>곳에 차량출입을 금지하거나 일방통행을 실시한다.</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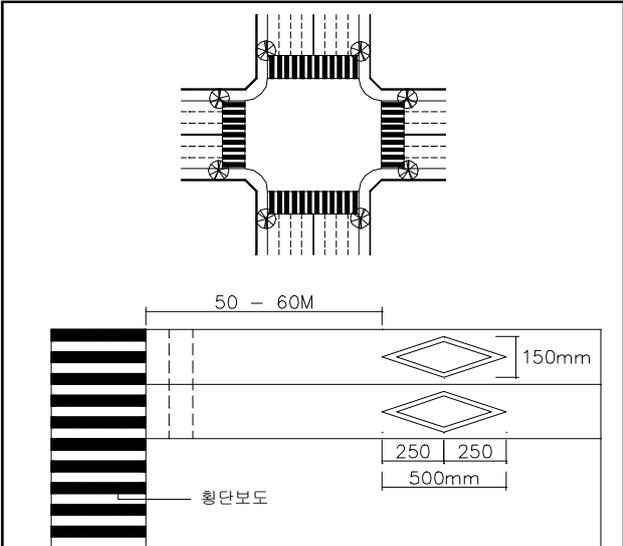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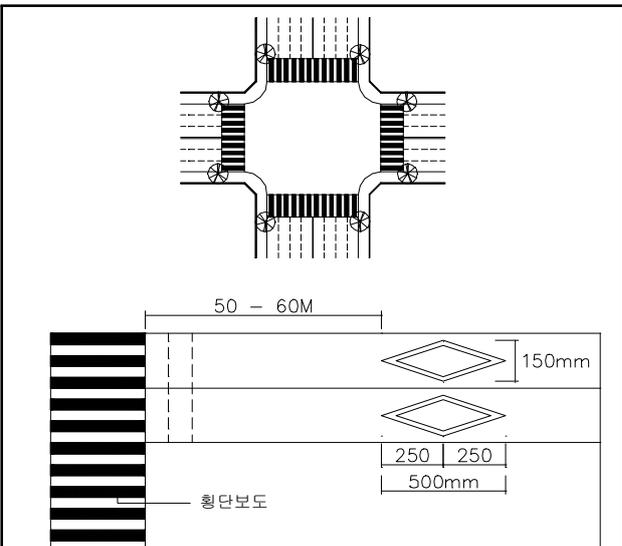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p>② 보행량이 밀집되는 간선도로변의 보도 조성은 민간부문 건축선 후퇴부분의 보행자를 위한공간과 일체로 조성한다.</p> <p>③ 차도와 보도사이에 완충공간의 확보를 위한 가로수, 가드웬스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p> <p>④ 철로변에는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방지를 위해 방음벽, 완충녹지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p> <p>⑤ 차량의 승·하차시설은 지하철역 주변에 설치하여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차장은 교차로, 횡단보도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p> <p>제6조 (버스 및 택시 정차대)</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 (버스정차대)</p>
<p>① 버스정차대 폭은 2-3m, 가속 및 감속구간을 10-20m씩 확보하고, 동시 정차대수를 2-4대를 기준으로 정차 대수당 15m를 확보하여야 한다. (예시도 참조)</p>	<p>① (삭제)</p>
<p>② 정차대 이격거리는 본 구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최소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p> <p>③ 버스정차대는 보행집산과 대기장소이므로 교통표지판, 안내판, 키오스크, 벤치겸 식수대, 보행등 등의 가로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설치한다.</p> <p>④ 정차장 진입부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일정구간(약20m 내외)은 가로장치물 및 교목식재를 배제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⑤ 버스정차대의 형태는 포켓형을 원칙으로 하되 버스의 운행이 적은 곳은 평면형 정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버스정차대 예시도</b></p>  <p style="text-align: center;"><b>버스정차대 이격거리</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전 방</th> <th colspan="2">후 방</th> </tr> <tr> <th>최 소</th> <th>적 정</th> <th>최 소</th> <th>적 정</th> </tr> </thead> <tbody> <tr> <td>교 차 로</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교 차 로</td> <td>40m</td> <td>60m</td> <td>20m</td> <td>30m</td> </tr> <tr> <td>횡단보도세가로</td> <td>30m</td> <td>30m</td> <td>15m</td> <td>30m</td> </tr> </tbody> </table> <p>제7조 (보행자전용도로)</p> <p>① 차량진입을 제어하기 위한 고정적이고 상징적인 가로시설물을 설치하되, 장소의 인식성 및 보행의 쾌적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p> <p>②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구분을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을 달리하며, 경계부분에 교통 안내판, 조명, <u>볼라드</u> 등 가로시설물을 설치한다.</p> <p>③ 보행자전용도로 진·출입부에는 차량통행의 원천봉쇄를 위한 차량제어 볼라드를 설치한다.</p>	구 분	전 방		후 방		최 소	적 정	최 소	적 정	교 차 로					교 차 로	40m	60m	20m	30m	횡단보도세가로	30m	30m	15m	30m	<p>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버스정차대 예시도 (삭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버스정차대 이격거리 (삭제)</u></p> <p>제7조 (보행자전용도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구분을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을 달리하며, 경계부분에 교통 안내판, 조명, 볼라드, <u>화분(식재)</u> 등 가로시설물을 설치한다.</p> <p>③ 보행자전용도로 진·출입부에는 차량통행의 원천봉쇄를 위한 차량제어 볼라드, <u>화분(식재)</u> 등을 설치한다.</p>
구 분		전 방		후 방																					
	최 소	적 정	최 소	적 정																					
교 차 로																									
교 차 로	40m	60m	20m	30m																					
횡단보도세가로	30m	30m	15m	30m																					

현 행	개 정 (안)
<p>④ 보행자전용도로와 차도와의 접속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과속 방지시설(Hump)을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감속시키도록 유도한다.</p> <p>제8조 (좌/우회전 차선)</p> <p>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간선가로 및 주 진입 교차로에서 도로용량을 극대화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좌회전 포켓을 유지·확보한다.</p> <p>② 좌회전차선은 평균 35m(6대분)를 유지·확보하여야 한다.</p> <p>③ 우회전 차선은 직진교통류의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지않고 교차로의 소통능력 향상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확보한다.</p> <p>④ 우회전차선은 교통량이 시간당 500대 이상인 교통량이 많은 경우와 6차선(대로2류) 이상인 도로교차로에 설치한다.</p> <p>⑤ 교차로부근의 우회전 차선은 3m기준으로 도로를 확폭하고 우회전 차선 길이는 우회전 차량 대수 및 직진 대기차량 대수에 의해 결정하되 통상 45m내외를 기준으로 결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좌회전차선 예시도</b></p> 	<p>④ (현행과 같음)</p> <p><u>제8조 (삭제)</u></p>

현 행			개 정 (안)
좌우회전차선의 테이퍼길이			
구 분	좌 회 전 테이퍼길이	우 회 전 테이퍼길이	
주간선 도로	1 : 20	1 : 20	
보조간선도로	1 : 10	1 : 10	
국 지 도 로	1 : 7	1 : 5	
<p>제9조 (과속방지 시설)</p> <p>① 설치간격은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m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한다.</p> <p>② 교차로부근 등 차량의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p> <p>③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통행속도를 시속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u>보행자우선도로 구간</u>에 설치한다.</p> <p>④ 보행자우선도로 진입부에 과속방지시설인 요철포장을 설치하여 진입차량의 속도를 감소시켜 보행자 보호를 도모한다.</p> <p>⑤ 과속방지시설의 설치시 차량 진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D = 20m 내외)내에는 진출입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설치를 배제한다.</p> <p>⑥ 운전자가 원거리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밝은색으로 요철포장을 한다.</p>			<p>제9조 (과속방지 시설)</p> <p>① 설치간격은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b>(삭제)</b>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통행속도를 시속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b>(삭제)</b> 도로에 설치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과속방지시설의 설치시 차량 진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b>20m 내외</b>) 내에는 진출입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설치를 배제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과속방지턱의 예시도		과속방지턱의 예시도	
반원형	평탄형	반원형	평탄형
			
험프횡단보도	교차로형	험프횡단보도	교차로형
			
제10조 (횡단보도)	제10조 (횡단보도)	제10조 (횡단보도)	제10조 (횡단보도)
① 일반적 설치 간격은 100m 이하로 계획하고 교차로상 보행동선의 길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 위치에 최대한 근접시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① (삭제) 교차로 상 보행동선의 길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각 위치에 최대한 근접시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① (삭제) 교차로 상 보행동선의 길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각 위치에 최대한 근접시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① (삭제) 교차로 상 보행동선의 길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각 위치에 최대한 근접시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② 장애자를 위해 경계석 턱을 낮추고 벨 신호기나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 보도블럭을 설치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차도와 횡단보도 경계부분에 불법 차량 진입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볼라드 겸 조명등을 설치한다.	③ 차도와 횡단보도 경계부분에 불법 차량 진입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볼라드 겸 조명등, 화분(식재)등을 설치한다.	③ 차도와 횡단보도 경계부분에 불법 차량 진입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볼라드 겸 조명등, 화분(식재)등을 설치한다.	③ 차도와 횡단보도 경계부분에 불법 차량 진입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볼라드 겸 조명등, 화분(식재)등을 설치한다.
④ 차량운전자에게 횡단보도를 주의시키기 위해 횡단보도 양쪽에 수목을 배치하여 차도폭을 시각적으로 좁게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보행자우선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는 따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전구간에 걸쳐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하여 보행자우선도로 기능을 최대화한다.	⑤ (삭제) 보행자전용도로에는 따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전구간에 걸쳐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하여 보행자전용도로 기능을 최대화한다.	⑤ (삭제) 보행자전용도로에는 따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전구간에 걸쳐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하여 보행자전용도로 기능을 최대화한다.	⑤ (삭제) 보행자전용도로에는 따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전구간에 걸쳐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하여 보행자전용도로 기능을 최대화한다.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도로의 유형별 횡단보도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도로의 유형</th> <th>횡단보도의 폭원</th> </tr> </thead> <tbody> <tr> <td>간선도로</td> <td>10 ~ 12m</td> </tr> <tr> <td>집산도로</td> <td>6 ~ 10m</td> </tr> <tr> <td>지구내 도로</td> <td>4 ~ 6m</td> </tr> </tbody> </table>	도로의 유형	횡단보도의 폭원	간선도로	10 ~ 12m	집산도로	6 ~ 10m	지구내 도로	4 ~ 6m	<p style="text-align: center;">도로의 유형별 횡단보도폭(삭제)</p>
도로의 유형	횡단보도의 폭원								
간선도로	10 ~ 12m								
집산도로	6 ~ 10m								
지구내 도로	4 ~ 6m								
<p style="text-align: center;">횡단보도 설치 예시</p> 	<p style="text-align: center;">횡단보도 설치 예시</p> 								
<p>제11조 (재료 선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구성이 높고 견고한 재료</li> <li>② 답압에 대한 내마모성이 있으며, 자연 배수와 세척 및 수선상 용이한 재료</li> <li>③ 보행자 하중은 물론이고 중차량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재료</li> <li>④ 질감이나 색채가 아름답고 시간이 경과 하더라도 물성에 변화가 없는 재료</li> <li>⑤ 각 가로의 정체성(identity) 및 특수한 환경에 부합되는 특성있는 재료</li> </ol>	<p>제11조 (재료 선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행과 같음)</li> <li>② (현행과 같음)</li> <li>③ (현행과 같음)</li> <li>④ (현행과 같음)</li> <li>⑤ (현행과 같음)</li> </ol>								

현 행	개 정 (안)
⑥ 시공과 개수가 용이하고, 염가이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재료	⑥ (현행과 같음)
⑦ 보도, 공공조경 등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수성이 양호하고, 환경친화적인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⑦ (현행과 같음)

[ 장소별 포장재료의 비교표 ]

재료의 종류	형 태	색/형태적 특 성	내구성	일반적 특성/적용	비 고	설치장소
아스팔트	-	•여름철 열반사복사	내마모성 약 함	•광범위한 지역의 포장, 주차장 등 •부드럽고 연하여 탄력성이 있어 보행이 용이	•가격저렴 •구입용이	•차도 •이면도로
투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	•색상, 형태다양	내마모성 약 함	•넓은 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등에 활용 •수목에 자연수 공급	•가격저렴 •구입용이	•소공원 •쌈지공원
콘크리트 블럭	-	•색상에 제한 •물이 고이기 쉬움 •하절기 햇볕 반사	내마모성 강 함	•개수가 용이하고 줄눈을 통한 자연배수 가능 •넓은 면적의 포장에 경제적 •미끄럼 표면방지 제공 •보양기간이 필요 •인장력이 낮고 쉽게 갈라지는 단점이 있으나 단위형태는 가능	•가격저렴 •구입용이	•보차도
소 형 고압블럭	정방형, 장방형, 코너형, 이형 등	•색상, 형태조합이 다양	내산성, 내마모성 양 호	•보행자 전용도로, 보도, 광장, 주차장 등 다양한 장소에 포장가능 •장소별 특성화 가능	•구입용이	•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쌈지공원
벽 돌	정방형, 장방형, 이형 등	•색상, 형태다양	내 산 성 양 호	•타 재료와의 조합이 어려움 •건축물과의 재료의 연속성 유지 용이 •미끄럼방지를 위한 표면처리에 적합 •압축공정을 거쳐 제조되며 크기는 다양	•구입용이	•쌈지공원 •소공원
타 일 (석재, 자기질)	정방형, 장방형, 이형 등	•색상, 형태질감 등의 조합이 다양	양 호	•광장, 휴게공간, 보도포장에 적합 •타 재료와 조화 •표현이 다양하므로 패션화 가능	•고가 •구입용이 •주문생산가능	•대형건축 진입부 •보행결절부
관 석	정방형, 장방형, 이형 등	•색상이 다양 •모양이 특이한 패턴	강 함	•넓은 지역에 일괄포장 가능 •일반적으로 건물진입부 등, 한정된 곳에 사용 •이형포장시 자연적인 분위기 연출 •고가이나 수명이 영구적	•고가 •주문생산	•소공원 •쌈지공원 진입부
자 갈	이형	•보행에 불편 •물달마오우려	강 함	•보행차단, 완화필요시 사용 •수목과의 조화, 모자이크 패턴 기능	•가격저렴 •구득용이	-
잔 디	-	•열, 습기, 먼지 흡수	-	•담압에 약하므로 포장연결 요소로 사용	•가격저렴 •구득용이	-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 (구성방식)</p> <p>① 가로는 일반포장 구간과 특별포장 구간으로 구분하여 가로의 일정공간 단위별로 특화포장하고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일정모듈을 개발하여 조성한다.</p> <p>② 가로위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u>전통문양, 새, 꽃 등의 기본패턴과 3-4종의 변형패턴을 조합하도록 한다.</u></p> <p>③ 대로변 보도는 가로수 식재간격인 8m를 기본모듈로 한 단순한 형태미를 갖은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시각적 흥미유발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p> <p>④ 보차공존 구간은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질감을 다르게 조성한다.</p> <p>⑤ 보도와 차도가 교차되는 보차혼용통로의 입구 및 주차장 출입구 전면의 보도포장은 견고하고 식별성이 용이한 유색 포장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차도보다는 보도의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한다.</p>	<p>제12조 (구성방식)</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가로위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u>제10조의 장소별 포장재료 비교표를 활용한 변형패턴을 조합하도록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3조 (패턴 및 질감의 적용)</p> <p>① 포장의 폭과 줄눈의 반복, 재료의 질감을 통해 보행자의 통행속도 및 리듬감을 조절한다.</p> <p>② 격자형 패턴은 중립적이고 방향성이 없는 곳에 사용을 유도하고 공간의 확산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원형의 패턴을 사용한다.</p>	<p>제13조 (패턴 및 질감의 적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 포장패턴은 건축물 및 부지내 요소들과 조화되어야 하며 요철포장은 완화와 정체를 표현할 수 있으며 차량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 보행의 안전 유도에 적절하게 사용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공간을 상호간으로 대비 시키고자 할 때에는 직선과 곡선의 반복 이용 및 이중 질감을 이용하여 표현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단위 줄눈의 크기가 작고 방향성이 없는 포장패턴은 안정감이 있으므로 휴식·기다림의 공간에 사용을 유도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이동성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의 포장패턴은 율동적이고 운동감이 강조되는 포장패턴을 사용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제14조 (보도 포장기준)</p>	<p>제14조 (보도 포장기준)</p>
<p>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해당 가로에 관련하여 포장재의 형태 및 규격은 가로 전체의 통일성과 주변 시설물들과의 조화를 유도한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공공부문의 포장원칙은 통일성과 조화의 유도와 민간부문의 포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제시하며 민간부문의 개별 포장기준보다는 우선순위를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보행자전용도로의 소형고압블록 또는 칼라 투수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구간전체가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슈퍼그래픽을 갖게 포장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④ 되도록 전면 재시공은 피하고 기존 보도블럭을 이용하여 부분적 변형을 통한 구간별 장소별 인지도를 부각하고 전체적 통일감과 이미지 제고를 유도한다.</p> <p>제15조 (사후관리)</p> <p>① 민간·공공 등 타부문의 공사 시행으로 인한 포장훼손시 공사 완료후 필히 당초대로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한다.</p> <p>② 공사완료후 공사시행자는 일체의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귀 했음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통보시 첨부자료 : 공사시행전/후 현황사진)</p> <p>제16조 (적용범위)</p> <p>① 도시안내표지시설은 보행안내시설과 차량안내시설로 나누어 지침을 작성한다.</p> <p>② 본 지침은 도로, 광장, 공공공지 등에 설치되는 가로정보체계에 관한 것으로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도로법, 도로표지규칙,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시설 관리편람(경찰청),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편람(건설교통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p> <p>제17조 (보행안내체계 조성방식)</p> <p>① 기능과 형태가 유사한 시설을 통합설계하여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가급적 보행결절부와 주요시설물 진입부에 집단배치하여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 (사후관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 (적용범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본 지침은 도로, 광장, 공공공지 등에 설치되는 가로정보체계에 관한 것으로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도로법」, 「도로표지규칙」,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시설 관리편람(경찰청)」,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편람(국토해양부)」, 「<b>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b>」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p> <p>제17조 (보행안내체계 조성방식)</p> <p>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② 정보의 위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표기하여 동질성과 조화를 갖게하여 효율적 안내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다른 가로장치물과의 일괄설계 및 통합배치를 통한 형태적 통일성을 기하여 효과적으로 정보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안내표지판의 높이,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 식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행 및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배치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안내표지판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유사형태의 안내표지판을 통일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내판의 크기는 단계를 두어 신축성 있게 규격화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식별성과 지역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의 독자적인 심볼, 로고 등 그래픽요소를 개발, 활용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 (보행안내체계 표기내용) 보행자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표기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8조 (보행안내체계 표기내용) (현행과 같음)
① 보행자의 현위치	1. (현행과 같음)
② 주요 목표지점까지의 거리	2. (현행과 같음)
③ 교통수단과의 연계상황	3. (현행과 같음)
④ 가로망, 블록구성, 주요시설, 버스노선 안내 등	4. (현행과 같음)
제19조 (보행안내체계 설치위치)	제19조 (보행안내체계 설치위치)
① 보행 결절점이나 교통 결절점에 종합안내시설을 배치하여 구역전체에 대한 정보와	①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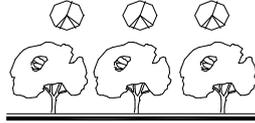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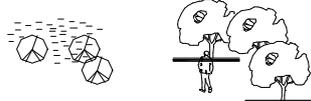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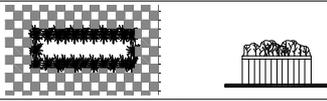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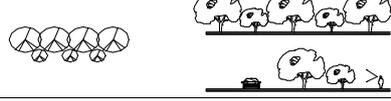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p>안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판으로 계획하여 지구 전체의 주요도로 및 시설,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다.</p> <p>② 보행자도로와 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구역안내판을 설치하여 도보권 내에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p> <p>③ 연속적인 안내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주요시설물 주변의 결절점 및 교차점에 방향안내판을 설치한다.</p> <p>④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안내판은 전체 버스노선과 인접주요시설의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p> <p>⑤ 시설안내 표지판의 난립으로 인한 식별성 및 경관불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표지 규칙에 의거 규격, 표기방법 등을 통일하여 동일성격의 표지판을 한곳에 집중 설치토록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보행안내판 설치 위치 및 내용			
구 분	설 치 위 치	안 내 내 용	형 태 / 재 료 / 색 체
중 합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교통결절점 (주간선교차로 등)</li> <li>주요공공시설</li> <li>도시적 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역 전체의 교통망</li> <li>주요시설 위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볼·로고등 그래픽 사용, 전체의 시각적 질서감 표현</li> <li>동판, 알루미늄 등</li> <li>안내표지판의 야간이용을 위해 조명등 설치</li> </ul>
구 역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보행결절점 (구역진입부, 보행자전용/우선도로 입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권별 교통망안내</li> <li>보행권의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별성, 지역이미지를 고려, 심볼·로고 활용</li> <li>강철파이프, 동판, 알루미늄 등</li> <li>안내표지판의 야간이용을 위해 조명등 설치</li> </ul>
방 향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역내 보행자도로접속부, 횡단보도</li> <li>공공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도 화살표에 의한 방향표시</li> <li>이정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식적이고 조형적인 형태, 심볼·로고 활용</li> <li>동판, 알루미늄, 칼라스테인레스 등</li> <li>안내표지의 내용과 바탕은 가시도가 높은 색채사용</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버스정차장</li> <li>택시정차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버스노선 안내</li> <li>시설안내</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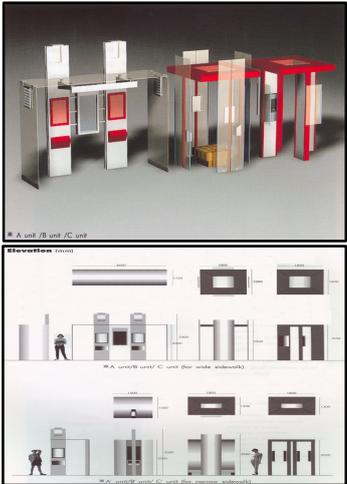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 (보행자 안내시설)</p> <p>① 보행자전용도로 주요진입부간에 안내표지판 또는 1m 높이의 안내기둥 형태의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p> <p>② 안내기둥 시설은 주간에는 시각적으로 지역(장소)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하여 밝은색(예 : 노랑바탕에 적색 줄무늬)를 사용하고 야간에는 조명을 이용하여 낮과 밤에도 연속적인 차량 및 보행안내 시설물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p> <p>③ 보행자전용도로 안내기둥 시설은 기타 시설물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장식적이고 조형적인 형태를 지님으로써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설계·배치한다.</p>	<p>제20조 (보행자 안내시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 (차량안내 체계 조성방식)</p> <p>① 표지판에 표기될 안내지명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설정한다.</p> <p>② 명명체계는 명명단위 우선순위를 지역명 - 시설명 - 도로명 - 구역명 순으로 교차로 위계별로 단계적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p> <p>③ 지구내 일방통행체계 구축에 대비하여 일방통행로 진입부에 차량안내기둥(색채·조형 고려)을 설치한다.</p>	<p>제21조 (차량안내 체계 조성방식)</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b>차량안내설치기준</b>		
구 분	명 명 체 계	표시내용
지역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곽지역 연결도로와 교차하는 간선/보조간선도로의 교차로에는 지역명을 표기하여 외곽지역으로의 방향을 지시한다.</li> <li>원거리명과 근거리지명을 동시에 표기할 경우 원거리 지명을 위쪽에 표기한다.</li> </ul>	지역명칭 대표장소 지역소개
시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들은 지명도가 높아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공 및 생활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한다.</li> <li>시설명을 지명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교차로 위계별로 단계적으로 표기한다.</li> <li>시설물의 2~3개 전방교차로부터 표기한다.</li> </ul>	주요지역명 대표적시설명 교통시설환승방법
도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목적지가 불분명한 경우는 도로명으로 표기한다.</li> <li>진행방향은 도로명을 표기하고 좌우측에는 도로명 혹은 지역명을 표기한다.</li> <li>방향 및 예고표지에는 진행방향과 교차방향의 노선번호를 표기한다.</li> </ul>	행선지명 가로명
구역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전체의 일관된 구역명의 체계확보를 위해 공공시설의 이용권, 개발밀도, 경관적 요소 등 동일한 경관 인식단위를 구역명의 기본단위로 한다.</li> <li>지구 내부도로에서는 구역명을 다른 위계에 우선하여 표기토록 하되 지구 경계선 교차로에는 인접 구역명을 표기한다.</li> </ul>	단지명(동네명) 구역내 가로망 방향
제22조 (차량안내체계 표기내용)	제22조 (차량안내체계 표기내용)	
차량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표기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① 진행방향 지명	1. (현행과 같음)	
② 전방에 교차할 도로의 노선번호	2. (현행과 같음)	
③ 전방교차지점까지의 거리	3. (현행과 같음)	
제23조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방식)	제23조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방식)	
① 교통안내표지판의 배치간격은 표지판의 인지도가 좋고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동작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교차로와 교통량 집중지역에는 배치간격을 줄이도록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제·지시표지는 규제와 지시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에 각각 설치하고 주의표지는 위험구역 입구나 혹은 위험지점 이전에 안내 표지는 교차로 및 교차로 전방에 배치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교통안내표지판 설치에 장애를 주는 도로의 부속시설은 그 위치와 규모, 진출입상태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24조 (도로표지판 설치방식)                      도로표지판의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하되 도로의 형태에 따라 10도 이내의 안쪽에 설치하며 시각적으로 장애를 주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운전자가 다음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방향표지판은 원거리와 근거리의 2개 지명을 표기하고 기존 교통안전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부착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p>	<p>제24조 (도로표지판 설치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가로식재</p> <p>제25조 (가로수 수종선택)                      ① 가로 특성 및 가로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정한다.                      ② 계절성이 풍부하여 토양, 기후 등 생태적 조건이 적합한 향토수종을 선정한다.                      ③ 이식이 용이하고 성장속도가 빠르고 정에 잘 견디며, 병충해에 강한 관리가 편리한 수종을 선정한다.                      ④ 꽃가루 등에 의해 인체에 알러지 질환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수종은 배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가로식재</p> <p>제25조 (가로수 수종선택)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p>
<p>제26조 (가로수 식재방법)                      ① 도로폭 30m이상, 보도폭 3m이상의 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그 폭원보다 도로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p>	<p>제26조 (가로수 식재방법)                      ① (삭제)</p>

현행	개정(안)
② 가로조명과 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 등이 가로수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간선도로의 교차부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인이 도로 변화를 쉽고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 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2열식재(건물앞 식재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가로변 식재는 간격 6~8m를 유지하되 버스정차장 주위에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일정거리(20m)를 후퇴하여 식재한다.	④ <b>가로변 식재는</b> 간격 6~8m를 유지하되 버스정차장 주위에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일정거리(20m 내외)를 후퇴하여 식재한다.
⑤ 가로변 독자성과 식별성 구현을 위해 일정구간을 기본단위로 수종선택 및 배식 기법의 다양화를 기하며 수목을 통한 지역 특성의 차별화를 도모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보행밀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목보호대를 폭 1-2m이하로 설치하고 수목보호대를 이용한 다용도 휴게·벤치공간(공공조경)을 조성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지하 공동구와 같은 구조물이 있는 인공지반위에 식재할 경우 1.2m의 토심과 주당 최소 9㎡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⑧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가려져 있는 녹지 및 조형물의 전방배치를 유도하여 승/하차장 주변 위주로 pocket-park 형식의 정적 휴게공간 설치를 유도한다.	⑧ (삭제)

현행		개정(안)		
<b>식재방법</b>				
구분		예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형규칙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변 등 공간이 선적인 장소 및 울타리를 조성하기 위한 외주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립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장 등 상징성과 경관을 필요로 하는 곳</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음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식공간, 공원 등 비교적 넓은 곳</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LANTER에 의한 화초류 식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밀식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차폐, 생울타리 등이 필요한 곳</li> </ul> </li> </ul>				
제27조 (식재기준)		제27조 (식재기준) (삭제)		
<b>식재기준 (삭제)</b>				
성격	조성지침	식재방식	권장수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성</li> <li>판매/쇼핑/위락공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열식재에 의한 보도의 수목터널화</li> <li>전면공지내의 식재와 공공부문의 식재가 어울어진 가로공원분위기 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열식재</li> <li>부분밀식식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엽교목류(회화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li> </ul>	
<b>보행공간 특성에 따른 식재계획 (삭제)</b>				
구분	식재의 특성	주요수종		
		성상	상록	낙엽
도시적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형 규칙 식재를 하여 상징성 있는 나무를 식재</li> </ul>	관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송, 향, 회양목, 사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쭉류, 모란, 개나리 등</li> </ul>
		교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나무, 소나무, 측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 느티, 자작, 침엽수, 단풍류, 백합 등</li> </ul>
		지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잔디 등</li> </ul>	
주거중심의 근린생활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엽 및 꽃 등 특징 있는 나무로 식재</li> </ul>	관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철, 눈향, 쥐똥나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나리, 철쭉, 장미류, 무궁화 등</li> </ul>
		교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목, 전나무, 잣나무, 소나무, 히말라야시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풍, 벚나무, 라일락, 은행, 느티, 자귀 등</li> </ul>
		지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잔디, 맥문동 등</li> </ul>	
자연적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녹지와 일체감 있는 나무로 식재</li> </ul>	관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동덩굴, 회양목, 사철나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나무, 으름덩굴, 철쭉류 등</li> </ul>
		교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측백, 편백, 전나무, 잣나무, 향나무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 단풍류, 낙우송, 수양버들, 플라타너스 등</li> </ul>
		지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잔디, 1-2년생 초본류, 화훼류</li> </ul>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 (설계기준)</p> <p>① 가로상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장치물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변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가로장치물의 형태, 자료, 색상을 통합·조절하는 가로장치물 개발 기본전략 프로그램으로 구축하고 이를 가로장치물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p> <p>② 가로별 특화를 위해 가로의 성격에 따라 특정가로 단위로 작성하여 가로별 재료, 형태의 동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p> <p>③ 도로성격에 따라 상호보완적 가로장치물은 배치유형을 도출하여 가급적 통합 설치하여 보도구간내에 각종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p> <p>④ 주요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집분산 지점에 가로장치물을 집중설치하여 집약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통합가로 시설물(예시도)</b></p> 	<p>제28조 (설계기준)</p> <p>① (삭제)</p> <p>② <u>가로장치물은</u> 가로별 특화를 위해 가로의 성격에 따라 <b>설치하여</b> 가로별 재료, 형태의 동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p> <p>③ <u>가로성격에</u> 따라 상호보완적 가로장치물은 배치유형을 도출하여 가급적 통합 설치하여 보도구간 내에 각종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통합가로 시설물(예시도) (삭제)</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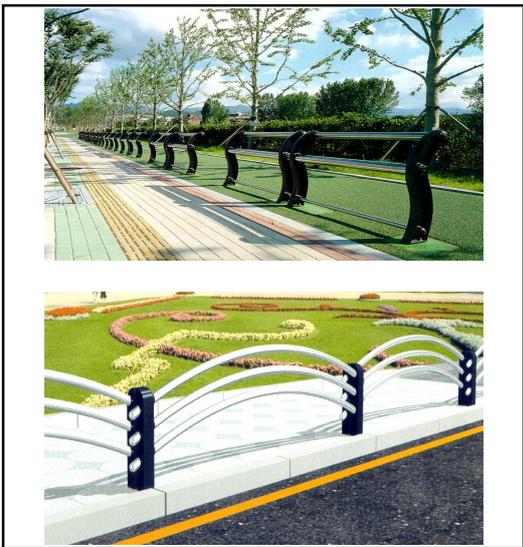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위치별 통합가로 시설물						위치별 통합가로 시설물 (삭제)
구 분	A	B	C	D	E	
휴 지 통	●	●	●	●	●	
벤 치	●	●		●	●	
공중전화	○	○	○	●	●	
음 수 대		○		●	○	
플 랜 터	●	○	●	○	○	
볼 라 드		○				
파고라, 쉼터		○			●	
가로관매대		●	○	○		
자전거보관대			●		○	
시 계 탑				○	○	
버스정차대		●				
문 주			○		●	

주 : ● 필수시설 ○ 권장시설  
 A : 쌈지공원 및 도로변형 B : 버스정류장형  
 C : 대형건축물 주변형 D : 보행결절점형  
 E : 광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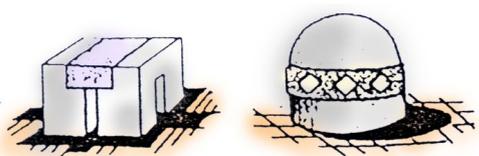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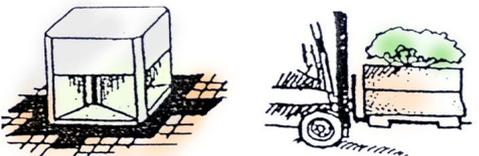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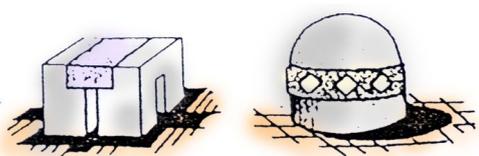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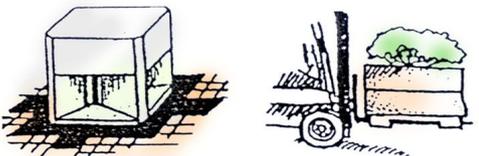
제29조 (방호 울타리)  
 보도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보행자의 도로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나 불법 승·하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간선가로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방호울타리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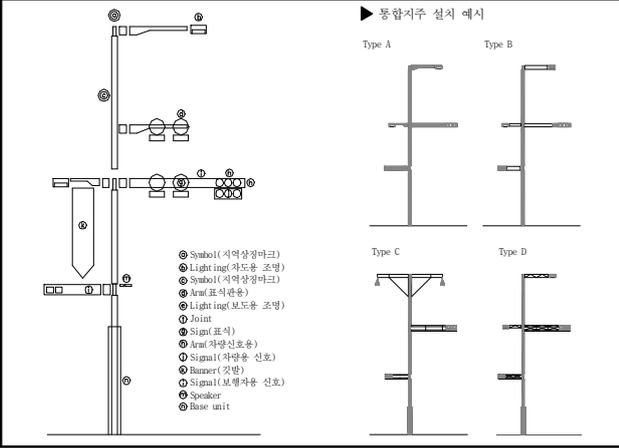
제29조 (방호 울타리)  
 보도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보행자의 도로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나 불법 승·하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간선가로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며,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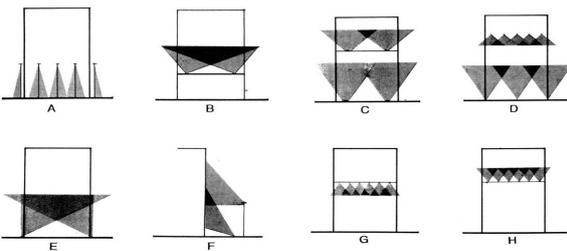
방호울타리 예시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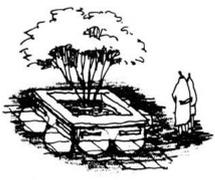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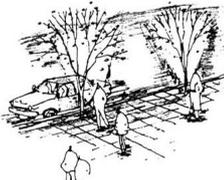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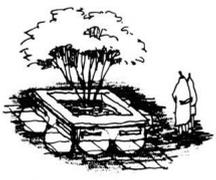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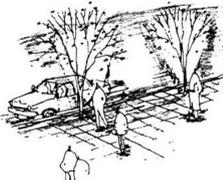
현행	개정(안)
<p>제30조 (볼라드)</p> <p>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반도로 경계 부근에 설치하며 1-2m정도 간격으로 배치하여 차량통행을 막도록 한다.</p> <p>② 야간 보행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u>보행등을 겸한 볼라드</u>를 설치한다.</p> <p>③ 교차로 및 횡단보도 각각부분 보도로의 무단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고 <u>비상시 차량진입을 위해 이동식</u>을 권장한다.</p>	<p>제30조 (볼라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야간 보행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u>볼라드 겸 조명등, 화분(식재)등</u>을 설치한다.</p> <p>③ 교차로 및 횡단보도 각각부분 보도로의 무단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고 <u>비상차량의 진입이 필요한 곳은 이동식으로 설치</u>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조명등을 겸한 고정식 볼라드</p>  <p style="text-align: center;">화분형태의 이동식 볼라드</p> 	<p style="text-align: center;">조명등을 겸한 고정식 볼라드</p>  <p style="text-align: center;">화분형태의 이동식 볼라드</p> 
<p>제31조 (가로등 설치방식)</p> <p>① 가로등 시설은 도로의 성격, 기능, 위계(폭원)에 따라 적합한 조도, 배열방식, 높이, 색상 등을 달리한다.</p> <p>②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 중앙가로등과 가로변 가로등을 병렬로 마주보기식으로 설치한다.</p>	<p>제31조 (가로등 설치방식)</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 구역내 이면도로의 가로등은 중간높이의 자연색조 등을 사용하여 가로변 가로등만 설치하되 조명보강 부분은 보행등을 보완하여 설치한다.</p> <p>제32조 (가로등 설치기준)</p> <p>①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KSA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p> <p>② 도로의 성격, 기능, <u>폭원</u>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한다.</p> <p>③ 가로변에는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교차로, 곡선부로타리, 횡단보도 등 도로구조가 변화하는 곳과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지점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④ 보도의 보행자용 가로등은 상호 교호형식으로 배치하고 조명이 발산하는 색감은 가로특성에 맞게 유도·조정한다.</p> <p>⑤ 가로등주를 현재의 Single-arm Bracket에서 부분적으로 Double-arm Bracket으로 개선하여 보도의 조명을 높이고 광원을 보강한다.</p> <p>⑥ 도로변의 가로등주는 테이퍼폴이나 주철폴을 사용하고 중심지역, 공원, 보행자공간에는 주철폴을 사용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2조 (가로등 설치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도로의 성격, 기능, <u>위계(폭원)</u>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조명기준의 차별화 방안			조명기준의 차별화 방안 (삭제)		
구분	주간선도로	지구내 이면도로			
노선구분	대로 1류1호선변	구역내 진입도로, 이면도로			
조도	폭 20m이상:30룩스 이상 폭 20m이하:30룩스 이상	교통량 발생량에 따라 15 - 20룩스 이상			
높이	10 - 20m	5 - 10m			
간격	30 - 40m	40 - 50m			
형식	중앙	보행등을 갖춘 가로변등			
등종	높은 조도의 등 (예 : 고압 나트륨 등)	자연색조의 등 (예 : 메탈 등)			
배치방식	마주보기식	어긋나기식			
조명시설의 종류(가로등 예시)			조명시설의 종류(가로등 예시)		
<p>15M 10M 5M 4M 3M 2M 1M</p> <p>주요차고, 광장용 (상장설 부여)    간선가로등 (중앙분리대)    간선가로등 (보도)    이면도로보행등    보행등    보행안부등</p>			<p>15M 10M 5M 4M 3M 2M 1M</p> <p>주요차고, 광장용 (상장설 부여)    간선가로등 (중앙분리대)    간선가로등 (보도)    이면도로보행등    보행등    보행안부등</p>		
<p>제33조 (통합지주의 설치)</p> <p>① 신호등, 가로등, 안내표지판 등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설치함으로써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p> <p>② 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와 통합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내력, 풍압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서 제시한 시설물외에 안내시설, 정보시설, 포식시설 등 각종 도시편익시설의 통합화를 시도하여 시설수의 최소화를 유도한다.</p>			<p>제33조 (통합지주의 설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④ 통합지주에 복합설치 될 교통안전표지의 후면은 미관을 고려하여 심볼이나 표어 등을 도식하여 가로경관을 제고시킨다.</p> <p>⑤ 통합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로등 + 신호등</li> <li>2. 가로등 + 3방향표지</li> <li>3. 가로등 + 3방향예고표지</li> <li>4. 가로등 + 신호등 + 교통안전표지(지시표지)</li> </ol>	<p>④ (삭제)</p> <p>⑤ 통합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현행과 같음)</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통합지주 설치 예시</b></p> 	<p style="text-align: center;"><b>통합지주 설치 예시 (삭제)</b></p>																		
<p style="text-align: center;"><b>통합지주의 설치 기준</b></p>	<p style="text-align: center;"><b>통합지주의 설치 기준 (삭제)</b></p>																		
<table border="1"> <thead> <tr> <th>설치위치</th> <th>설치시설</th> <th>통 합 시 설</th> </tr> </thead> <tbody> <tr> <td>교 차 로</td> <td>신호등</td> <td>•신호등, 주요도로 및 지점안내표지, 가로등(횡단보도 신호등), 기타 부착물</td> </tr> <tr> <td>교차로 전방 30이내</td> <td>가로등</td> <td>•가로등, 방향표지</td> </tr> <tr> <td>교차로 전방 100-150</td> <td>가로등</td> <td>•가로등, 방향예고표지</td> </tr> <tr> <td>횡단보도</td> <td>횡단보도, 신호등</td> <td>•횡단보도 신호등, 가로등</td> </tr> <tr> <td>기타일반 도로구간</td> <td>가로등</td> <td>•교통안전표지(주의, 규제, 지시표지), 가로등,보행안내 표지 •가로등, 보행안내 표지</td> </tr> </tbody> </table>	설치위치	설치시설	통 합 시 설	교 차 로	신호등	•신호등, 주요도로 및 지점안내표지, 가로등(횡단보도 신호등), 기타 부착물	교차로 전방 30이내	가로등	•가로등, 방향표지	교차로 전방 100-150	가로등	•가로등, 방향예고표지	횡단보도	횡단보도,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등, 가로등	기타일반 도로구간	가로등	•교통안전표지(주의, 규제, 지시표지), 가로등,보행안내 표지 •가로등, 보행안내 표지	
설치위치	설치시설	통 합 시 설																	
교 차 로	신호등	•신호등, 주요도로 및 지점안내표지, 가로등(횡단보도 신호등), 기타 부착물																	
교차로 전방 30이내	가로등	•가로등, 방향표지																	
교차로 전방 100-150	가로등	•가로등, 방향예고표지																	
횡단보도	횡단보도,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등, 가로등																	
기타일반 도로구간	가로등	•교통안전표지(주의, 규제, 지시표지), 가로등,보행안내 표지 •가로등, 보행안내 표지																	

현행	개정(안)																		
<p>제34조 (야간조명의 강화)</p> <p>① 야간보행 등을 독특하게 설계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주요 교차로의 보차도 경계석은 형광물질이 부착된 것으로 교체하여 야간에도 쉽게 장소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p> <p>② 야간 보행밀도가 많은 보차혼용도로 주변 차도측으로 보행등 겸 벤치·볼라드를 설치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휴게·편익을 도모한다.</p> <p>③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킨다.</p> <p>④ 공공이 야간경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적극적인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p>	<p>제34조 (야간조명의 강화)</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p>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하부조명 강화</b></p> <table border="1" data-bbox="167 1348 786 1601"> <thead> <tr> <th>조명</th> <th>해당용도</th> <th>높이</th> <th>간격</th> <th>광원</th> <th>조명방식</th> </tr> </thead> <tbody> <tr> <td>볼라드형 보행등</td> <td>보행자 전용도로</td> <td>0.8-1.5m</td> <td>2-4m</td> <td>백열등 나트륨등</td> <td>측향/하향 간접/직접조명</td> </tr> <tr> <td>접지형 조명등</td> <td>주요 조형물 또는 식재, 건물의 외벽, 보도의 바닥</td> <td>접지형</td> <td>불규칙</td> <td>백열등 나트륨등</td> <td>상향 / 측향 / 하향측간접조명</td> </tr> </tbody> </table>	조명	해당용도	높이	간격	광원	조명방식	볼라드형 보행등	보행자 전용도로	0.8-1.5m	2-4m	백열등 나트륨등	측향/하향 간접/직접조명	접지형 조명등	주요 조형물 또는 식재, 건물의 외벽, 보도의 바닥	접지형	불규칙	백열등 나트륨등	상향 / 측향 / 하향측간접조명	<p style="text-align: center;"><b>하부조명 강화 (삭제)</b></p>
조명	해당용도	높이	간격	광원	조명방식														
볼라드형 보행등	보행자 전용도로	0.8-1.5m	2-4m	백열등 나트륨등	측향/하향 간접/직접조명														
접지형 조명등	주요 조형물 또는 식재, 건물의 외벽, 보도의 바닥	접지형	불규칙	백열등 나트륨등	상향 / 측향 / 하향측간접조명														
<p style="text-align: center;"><b>건물외부 조명 예시</b></p> 	<p style="text-align: center;"><b>건물외부 조명 예시 (삭제)</b></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장소별 조명 예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다용도 벤치 주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간 선 변</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건축물 측면 화단 주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건축물 측면 및 휴게공간 주변</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장소별 조명 예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다용도 벤치 주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간 선 변</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건축물 측면 화단 주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건축물 측면 및 휴게공간 주변</p> </div> </div>
<p>제35조 (설계도서 작성)</p> <p>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자는 지구단위계획의 공공부문 시행지침 및 예시도를 기초로 하여 부문별로 면밀한 여건분석과 계획, 설계 등의 상세 <u>도서작성 후</u> 집행하여야 한다.</p>	<p>제35조 (설계도서 작성)</p> <p>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의 공공부문 시행지침 및 예시도를 기초로 하여 부문별로 면밀한 여건분석과 계획, 설계 등의 상세 <u>도서작성(기타 각종 시설물 설계시 상세기준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09) 준수」)후</u> 집행하여야 한다.</p>
<p>제36조 (지침의 조정)</p> <p>① 본 지침상의 예시된 사항이라도 향후 별도 부문별 계획설계, 구역별설계 등 상세설계가 추진되어 본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또는 조정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들 계획을 반영·조정할 수 있다.</p>	<p>제36조 (시행지침의 조정)</p> <p>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구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구역의 교통영향분석 등 교통관련 사업,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li> <li>2. 현상설계를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li> <li>3. 지침을 완화 조정하여도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착상으로서 사전심의를 득할 경우</li> <li>4. 당해 대지조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li> </ol>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지침을 완화 조정하여도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착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4. (현행과 같음)</li> </ol>

3.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공통부문)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 및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p> <p>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을 허가하는 허가권자가 완화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p> <p>② 기존 건축물의 개축의 경우에는 개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p> <p>③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 중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p> <p>④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p> <p>⑤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위 규정에 불</p>	<p>제1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기존 건축물의 재축·증축·개축·대수선 등의 경우 규모(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건축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며,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에 한한다.</p> <p>① (삭제)</p> <p>② (삭제)</p> <p>③ (삭제)</p> <p>④ (삭제)</p>

현 행	개 정 (안)
<p>구하고 당해 건축을 허가하는 허가권자가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 적용여부를 결정한다.</p>	<p>⑤ (삭제)</p>
<p>제21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시침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의 개정·제정 및 변경으로 시행지침 내용이 부적합할 경우는 개정·제정 및 변경된 지침 및 법령에 따른다.</p>	<p>제2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① (현행과 같음)</p>
<p>②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p>	<p>② (삭제)</p>
<p>③ 도시계획결정조서와 도시계획결정도가 상이한 경우 도시계획결정도에 따른다.</p>	<p>③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가 상이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p>
<p>④ 도면에 표기된 대지분할가능선은 위치, 규모, 형태를 표기한 것으로서 당해 건축을 허가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필지의 분할 및 합병에 대해서도 같다.</p>	<p>④ (삭제)</p>
<p>⑤ 도면에 표기된 공동개발(권장)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 또는 장려하는 사항으로 공동개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p>	<p>⑤ 도면에 표기된 공동개발(권장)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 또는 장려하는 사항으로 여건상 공동개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기준 완화)</p> <p>①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행위제한완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을 준용한다.</p> <p>②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보차혼용통로 등 일반시민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지부분은 건축허가시 대지면적에 포함하여 용적률 및 건폐율을 산정한다.</p>	<p>제3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기준 완화)</p> <p>① (삭제)</p> <p>②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삭제) 등 일반시민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지부분은 건축허가시 대지면적에 포함하여 용적률 및 건폐율을 산정한다.</p>
<p>제23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p> <p>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25조 4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제4조 (지구단위계획 변경)</p> <p>(본문삭제)</p> <p>①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외)을 금한다. 다만, 관계법령, 조례의 제·개정, 상위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p> <p>②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절차를 적용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p>

현 행	개 정 (안)
(신설)	<p>다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공동위원회(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 심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p> <p>제5조 (군사시설보호구역, 시지정문화재영향검토구역)</p> <p>① 상기 구역에 해당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 인·허가시 관계기관(부서)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p>

# 제 출 문

---

---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2년 11월

주식회사 장 원  
대표이사 송 영 달  
주식회사 방총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 상 욱

# 과업 참여자 명단

---

---

사업책임기술자    민영삼

도시계획분야    김영춘    강완기    김용일  
                         장양훈    이해균    이창순  
                         최창열    우승면    안상준  
                         김영진    강근성

도로및공항분야    양승열    안동만    최민규  
                         이희량    윤희정    안선일  
                         박시엽    강희명

교통분야    문은영    남지현

환경분야    윤원상    문현경    김영일

건축분야    이덕현    김청    김형운